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Agricultural Heritage District Designation

진태승 Jin, Teseung

한수경 Han, Sukyoung

(a u r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Agricultural Heritage District Designation

지은이 진태승, 한수경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6년 04월 30일, 발행: 2026년 04월 30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ISBN: 979-11-5659-545-8

연구진

연구책임 진태승 연구원

연구진 한수경 부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오성훈 부원장
이여경 건축혁신본부 본부장
장민영 지역재생본부 본부장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과장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연구자문위원 구진혁 (주)지역계획연구소 누리 대표
정명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최진아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길식 (주)명소아이엠씨 대표
김정숙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곽병민 청양군 농촌산업팀 팀장
복영수 청양구기자 보존협의회 부회장
임진택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이민철 완주 생강 전통농업 보존협의회 이사장
현숙이 부안 유유누에마을 보존협의회 사무국장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농업유산지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구 설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미흡

-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촌특화지구 8개 유형 중 하나로 농업유산지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정비를 목적으로 함
- 전국 농촌 시·군(139개)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1]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농업유산지구 지정기준만으로는 지구의 공간적 범위와 설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
- 국가중요농업유산(가치 인정 및 보전·활용)과 농업유산지구(공간적 토지이용 관리) 제도 간 역할 정립과 효과적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과 보전·활용계획을 분석하여 농업유산지구 설정의 원칙과 방향을 도출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법제도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농업유산지구의 제도적 쟁점을 진단
- 20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의 핵심 공간 요소와 요소 간 연결 방식을 분석하여 ① 수계 연동형, ② 산림 공생형, ③ 수목 군락형, ④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⑤ 적지 분산형의 5개 공간 유형으로 분류
- 국가중요농업유산 공간 유형별 대표 10개의 보전·활용계획을 가치순환 단계(농업생산 - 가공·유통 - 체험·교류 - 정주·생활)별로 분석
- 그 결과, 계획 내용이 전통농업 유지를 위한 보전적 토지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체험·교류 부문은 축제·탐방로 등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시설 입지에 관한 공간 계획이 미흡하고, 가공·유통 및 정주·생활 부문의 공간 계획은 미흡하거나 부재

농업유산지구 설정 기본방향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농업유산지구의 목표상을 ‘동적 보전(Dynamic Conservation)을 통한 농업유산의 가치 보전과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설정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과의 관계를 ‘포괄적 지정 - 선별적 관리’ 모델로 정립
- 지구 설정 원칙으로 ① 농업시스템의 완결성, ② 가치순환의 공간적 수용, ③ 관리 의무 이행 가능성을 제시하고, 5개 공간 유형별 차별화된 범위 설정 방법과 지구 내부의 핵심 보전구역·연계활용구역 구분 방향 도출
- 지구 지정 공통 요건으로 ① 고유성 및 전통성, ②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③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다양성, ④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의 4가지 공통 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기초조사 → 가치 인정 → 지구 지정’의 단계적 경로를 거치도록 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경관농업지구 등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중첩·연계 지정 방향을 제시
-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본방향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지침」 개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농업유산지구 제도의 연계를 규정하기 위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개정 제안
- 또한 농업유산지구의 실효적 관리 수단 강화를 위해 농업유산의 복합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국토계획법」상 (가칭)농업유산보호지구 신설 등을 장기적인 법률 개정 검토 과제로 제시
- 향후 과제로 농업유산지구 지정·운영 매뉴얼 개발, 지구 내 관리수단 구체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후속 연구와 더불어, 농업유산지구 시범 모델 구축 사업 추진 제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흐름	7
제2장 농업유산지구 지정 관련 법제도 검토	11
1. 농업유산 관련 법제도 검토	12
2.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및 사례 검토	19
3. 소결: 농업유산지구의 제도적 쟁점과 시사점	35
제3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 특성과 공간관리 현황 분석	39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과 공간 특성	40
2. 보전·활용계획에 나타난 공간관리 현황과 문제점	60
3. 소결: 공간관리의 문제점과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시사점	66
제4장 농업유산지구 설정 기본방향	69
1. 농업유산지구의 목표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의 관계	70
2. 농업유산지구 설정 원칙과 고려사항	74
제5장 결론	85
1. 농업유산지구 관련 제도 개선	86
2. 향후 과제	90
참고문헌	93

[표 1-1]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3
[표 1-2]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농업유산지구 제도 개요	5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표 2-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13
[표 2-2] 지방자치단체 농업유산 관련 조례 현황	17
[표 2-3] 세계중요농업유산 5 가지 선정 기준 및 실행계획	20
[표 2-4] 일본 니시야와 급경사지 농업 시스템의 5 대 부문 주요 특징	21
[표 2-5] 이탈리아 소아베의 5 대 부문 주요 특징	24
[표 2-6] 문화유산 경관법전과 와인법(원산지 명칭 제도) 비교	26
[표 2-7] 이탈리아 소아베 전통 포도밭의 생산규정을 통한 세부 구역 관리	28
[표 2-8]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역사적 관개시스템의 5 대 부문 주요 특징	29
[표 2-9]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지역의 보호농지 및 회복지 관련 주요 지침 내용	32
[표 2-10] 일본 니시야와,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이탈리아 소아베 사례의 토지이용 관리 방식 차이 ..	34
[표 3-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26 년 3 월 현재)	40
[표 3-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 보전·관리계획에 따른 세부구역 설정	43
[표 3-3] 국가중요농업유산 핵심지역 설정 방식	48
[표 3-4]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핵심보전구역 설정기준(GIS 기반)	49
[표 3-5] 국가중요농업유산 핵심지역의 공통 속성과 사례	50
[표 3-6]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핵심 공간 요소와 연결 방식	51
[표 3-7] FAO GIAHS 농업시스템 유형 분류	53
[표 3-8] 농업유산 유형 분류와 유형별 공간관리의 초점	59
[표 3-9] 보전 및 활용계획 분석 대상	60
[표 3-10] 가치순환 단계별 보전 및 활용계획 주요내용	63
[표 4-1]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농업유산지구의 역할	71
[표 4-2] 농업유산지구 내 세부구역 구분 및 운용 방향(안)	76
[표 4-3] 농업유산지구 지정 요건 판단 기준	77
[표 4-4] 농업유산 공간 유형별 범위 설정 방법	79
[표 5-1]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86
[표 5-2]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개정안	88

[그림 1-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4
[그림 1-2] 연구 흐름도	10
[그림 2-1] 세계중요농업유산 동적 보전 프레임워크	19
[그림 2-2] 일본 니시야와 급경사지 농업 시스템의 공간적 특성	22
[그림 2-3] 이탈리아 소아베 전통 포도밭	24
[그림 2-4] 이탈리아 소아베 전통 포도밭의 공간적 특성	25
[그림 2-5] 문화유산·경관법전과 와인법의 상호 보완을 통한 경관관리 구조	26
[그림 2-6] EU 규칙, 이탈리아 와인법 및 생산규정 간 관계	27
[그림 2-7]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의 물 배분 시스템	29
[그림 2-8]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역사적 관개시스템의 공간적 특성	30
[그림 2-9]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의 보호농지 및 회복지 구분	31
[그림 3-1] 청산도 구들장논 농업유산지역-일반관리구역-핵심보전구역 현황	45
[그림 3-2] 제주밭담 보전 핵심구역	45
[그림 3-3] 담양군 대나무밭 분포현황 및 핵심마을 3 곳	46
[그림 3-4] 울진 금강송 핵심보전구역-완충구역-특별관리구역 현황	46
[그림 3-5]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핵심지역	47
[그림 3-6] 장흥 지정 지역 및 핵심지역(차밭)	47
[그림 3-7]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지정 지역 및 핵심지역	47
[그림 3-8] 특정 읍·면 단위 핵심지역 및 주변지역 구분 사례(서천군, 청양군)	47
[그림 3-9] 수계 연동형	54
[그림 3-10] 산림 공생형	55
[그림 3-11] 수목 군락형	56
[그림 3-12]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57
[그림 3-13] 적지 분산형	58
[그림 3-14] 적지 분산형 - 청양 구기자 농업	58
[그림 4-1] 수계연동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80
[그림 4-2] 산림공생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81
[그림 4-3] 수목군락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82
[그림 4-4] 생산-가공 연계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83
[그림 4-5] 적지분산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8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3)으로 농촌특화지구 중 하나로 농업유산지구 제도 도입
 -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¹⁾ 시행으로 농촌특화지구 제도 도입
 - 농촌 정책은 기존 점(點) 단위로 분산된 개별 지원사업 위주의 접근에서 면(面) 단위 공간계획에 기반한 개발·이용·보전 및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²⁾
 -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한 토지이용 관리 수단으로서 8개 유형으로 구분(「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제1항)
 - 이 중 농업유산지구는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³⁾로 정의
 - 농업유산지구는 경관농업지구와 함께 “농촌의 특징적인 경관, 생태자원, 전통적 농업자원 등 농촌다운 토지이용 특성을 보전, 육성, 관리하기 위한 지구”(「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6-1-1. ③-3)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농업유산지구는 “전통농업 자원의 훼손과 단절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전·활용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를 보전하며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 7-3-7 (1))
 - 이와 같이 농업유산지구는 농촌환경을 단지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유산을 통해 농촌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1) 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2) 농림축산식품부. (2024.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p.10

3) 「농촌공간재구조화」 제12조제1항제7호.

[표 1-1]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구분	정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시설농업 등의 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지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고시설 및 사무공간 등 서비스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지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 집단지화 등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집단지화를 조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출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농업유산 보전·활용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⁴⁾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20개소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6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 2015년 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⁵⁾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보유 건수 총 9개(어업유산 3개 포함)로 세계 3위의 국제적 위상 보유⁶⁾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서는 시·군별 1개 이상의 경관농업·농업유산 보전지구 육성을 목표로 제시⁷⁾
 -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특색있는 지역농업유산을 신규로 발굴하여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방향 제시
 - 또한 농업유산 조사부터 활용까지 지역주민·청년 등의 참여체계 구축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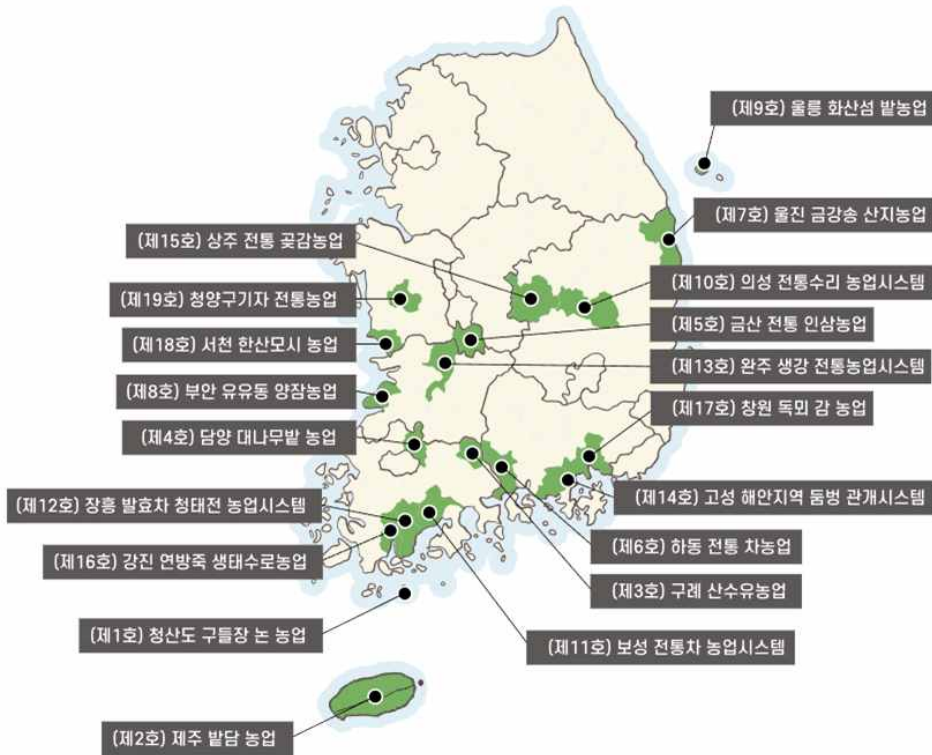
4) 2015년 해양수산부 신설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분리 운영. 2026년 1월 현재 어업유산은 총 16개 지정

5)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6) 관계부처합동. (2025). 한국의 전통 농어업 유산 4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공식 인증. 11월 2일 보도자료.

7)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p.16; 기본방침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기관의 전략적 계획

-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는 “(가칭) K-Heritage 프로젝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여, 농업유산의 보전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⁸⁾
 - 농어촌의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을 2029년까지 14개소로 확대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이와 함께 세계·국가중요농어업유산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을 연계 과제로 검토



[그림 1-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출처: 제9회 동아시아농어업유산협의회(ERAHS) 국제 컨퍼런스 홈페이지, <https://erahs.krha.co.kr/ko/heritage/system>(검색일: 2026.1.30.)

주. 제20호 정읍 지항 농업시스템은 미반영

■ 농업유산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 설정 원칙 및 제도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전국의 농촌 시·군(139개)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유산지구를 실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 대부분의 농촌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농촌특화지구 지정 예정

8) 관계부처 합동. (2025.3). 2025~2029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p.21~22

- 현재 농업유산지구의 지정기준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별표1]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의 공간적 범위와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미흡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매뉴얼, 농촌특화지구계획⁹⁾ 수립지침 마련('26 상반기) 등 지구 지정에 관한 지침 구체화 추진 중¹⁰⁾
- 농업유산지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두 제도 간의 연계 방안 마련도 필요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유산의 가치 인정 및 보전·활용을, 농업유산지구는 공간적 토지이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바, 두 제도 각각의 취지에 맞는 역할 정립과 효과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중 농업유산지구로 지정할 범위의 설정 기준,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농업유산지구 지정 요건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표 1-2]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농업유산지구 제도 개요

구분	국가중요농업유산	농업유산지구
근거법	농어업인삶의질법(2015~)	농촌공간재구조화법(2024~)
목적	농업유산의 가치 인정 및 보전	농촌유산의 공간적 관리(보전·활용)
성격	유산(농업시스템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 지정	토지이용 관리 수단
지정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출처: 「농어업인삶의질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연구의 목적

■ 농업유산지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과 고려사항 제시

-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제도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토지이용 관리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 범위 설정의 원칙 정립 및 고려해야 할 요소 도출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과 농업유산지구 간의 공간적 관계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 지구 지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 제시

9) 현행 법률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변경) 전이라도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발의(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0, 2025.9.16. 제안)

10) 농림축산식품부. (2026). '26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책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일부 사례 지역의 보전·활용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 실시
 - 전체 유산에 대해서는 공간적 특성과 사례지역 선정에 위한 개괄적 분석 수행
 -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과 농업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지역에 대한 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내용적 범위) 농업유산지구 설정에 관한 법제도 검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관리 실태 분석, 농업유산지구 설정 기본방향 제시, 제도개선 제안 등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농업유산 관련 법제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振興을 위한 농업유산관리법」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업유산지구 관련 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조사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보전 및 활용계획 내용 조사
 -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및 사례 조사
-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 대표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공간관리 실태 파악
 - 사례지역 지자체 담당자, 농업유산 관리·활용 주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과 농업유산지구 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
 - 농업유산 및 농촌계획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구 설정 원칙 및 기준의 현장 적합성에 대한 의견 수렴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흐름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 관련 선행연구

- 농업유산의 개념 및 특성 연구: 농업유산 제도의 이론적 기반 제공
 - 정명철 외(2016)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신청서를 분석하여 농업유산의 가치 구성요소 분류 및 체계화
 - 정명철 외(2022)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중 청산도 구들장논, 고성 뚝방 등 전통수리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적 가치를 분석하여 전통수리시설에 내재된 역사성과 전통 지식을 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ICID 세계관개시설물 유산과의 상응성 확인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정책 연구: 농업유산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
 - 백승석(2017)은 농업유산 정책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보전관리를 위한 5대 정책을 제안: ① 지역-국가-세계 위계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② 지정기준 완화, ③ 모니터링 의무화, ④ 브랜드 강화, ⑤ 예산 확대
 - 이정환 외(2018)은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공통지표와 지구별 자율지표로 구성된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준비-지정-관리의 3단계 관리체계 제시
 - 이유직·이다영(2019)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사례 지역의 보전·활용계획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시사점 및 개선 제안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효과 및 평가 연구: 제도·정책의 실효성 검증
 - 도지윤·정명철(2022)는 울릉도 화산섬 발농업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시행 전후 방문객 인식을 분석하여 지정 후 키워드 간 연결관계 증가, 전통농업 방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 등 효과 확인
 - 도지윤·정명철(2023)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효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재생 방안의 적용 가능성 모색

- 농업유산 활용 및 지역활성화 연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임근욱(2021)은 강진군 병영면을 대상으로 에코뮤지엄 모델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전략 도출
 - 김현지(2024)는 일본 최초의 세계농업유산 지역인 이시카와 노토 지역과 니이가타 사토 지역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연계 펀드, 농산물 브랜드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치공유 활동 등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농업유산지구 도입 관련 연구
 - 김정섭 외(2020)는 농촌특화지구 제도 도입 전,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구 지정 제도 및 지원 정책 구상
 - 권봉관(2024)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 사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업유산지구는 해당 농업유산지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의 필요성 강조

■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 등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업유산지구’로 전환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연구임
 - 그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특성, 제도·정책, 효과, 보전·활용 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 아직 농업유산지구(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 사례가 없는 시점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의 효과적 지구 지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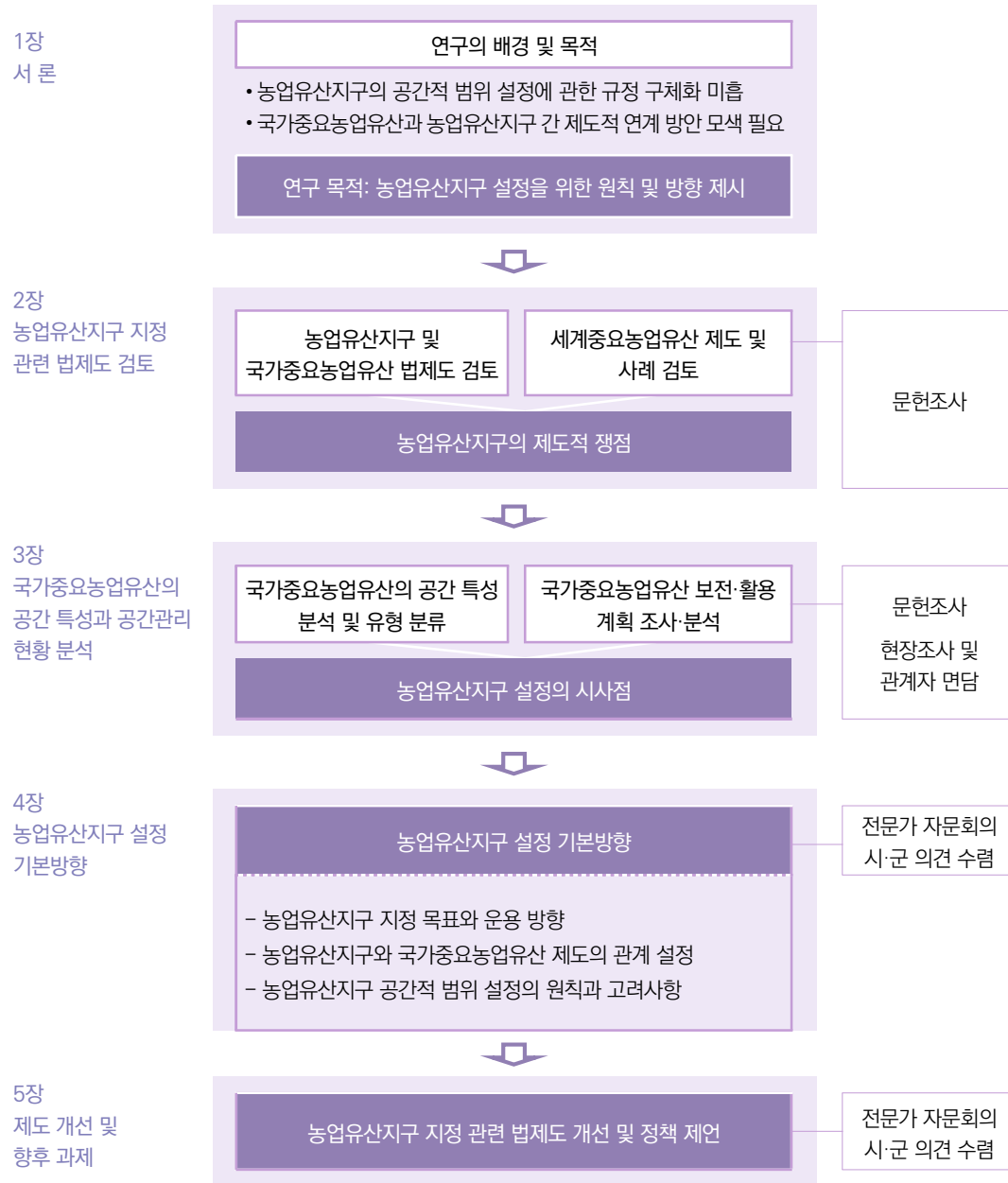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개념·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농업유산의 특성 분석 - 연구자(년도): 정명철 외(2016) - 연구목적: GIAHS 등재지역 농업유산의 특성 분석 및 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 GIAHS 신청서 분석, 구성요소 추출, 유형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가치 구성요소 분류 및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전통수리시설의 특징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연구자(년도): 정명철 외(2022) - 연구목적: 전통수리시설의 특징과 문화유산적 가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선정 지역 사례 분석 - 유네스코 ICID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수리시설의 역사성과 전통지식 - 유네스코 세계유산, ICID 세계관개시설물 유산과의 비교 - 국내 사례 분석
제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 - 연구자(년도): 백승석(2017) - 연구목적: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정책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언: 보전관리체계 확립(지역-국가-세계), 지정기준 완화, 모니터링 의무화, 브랜드 강화, 예산 확대

	<p>리 정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 관리체계 개발 연구 - 연구자(년도): 이정환 외(2018) - 연구목적: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보전관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고찰 - 해외사례 조사 - 전문가그룹 인터뷰 - 현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체계(준비-지정-관리 3단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국가중요농업유산 이해관계자의 협력관계 분석 - 연구자(년도): 이유직·이다영(2019) - 연구목적: 국가중요농업유산 이해관계자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보전·활용계획 분석 - 사례지역(6개) 담당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이해관계자의 유형과 역할, 현황 분석 - 제도 운영의 시사점 및 개선 제안
효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객 인식 변화 - 연구자(년도): 도지윤·정명철(2022) - 연구목적: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시행 전후 방문객 인식 변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마이닝 - 감성분석 - 네트워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후 방문객 인식 변화(키워드 연결관계, 긍정적 인식, 전통농업 방식에 대한 인식 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농촌 재생을 위한 농업유산 지정 효과 측정 연구 - 연구자(년도): 도지윤·정명철(2023) - 연구목적: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효과 측정 기지표 개발 및 농촌 재생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실태 조사 - 주민설문 - AHP분석 - FGI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효과 분석 - 농촌 재생(RURITAGE) 모델 적용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농업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개발 전략 -강진군 병영면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임근욱(2021) - 연구목적: 농업유산 활용 농촌관광 전략 수립(강진군 병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고찰 - 에코뮤지엄 모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자원 분석 및 유형화 - 에코뮤지엄 적용 방안 제시 - 농촌관광 전략 도출
활용·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일본 세계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사례 분석 연구 - 연구자(년도): 김현지(2024) - 연구목적: 농업유산 활성화 및 지역활성화의 시사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현황 사례 조사 -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세계농업유산의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 및 효과 고찰 - 일본 사례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도입 연구: 강원도 철원군을 사례로 - 연구자(년도): 정해용(2021) - 연구목적: 접경지역(철원군) 국가중요농업유산 도입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고찰 - 지정기준 분석 및 지역 적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분석 - 철원평야 적용방안 검토 - 지정효과 검토
농업유산 지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실태 조사 연구 - 연구자(년도): 김정섭 외(2020) - 연구목적: 국가중요농업유산 지구 지정 제도 및 지원 정책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제도 검토 - 외국 정책사례 조사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실태 조사(Q-방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실태 조사 -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지구 도입 및 지원 정책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농업유산지구 도입에 대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 개선 방안 -A군의 농업유산 지정 과정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권봉관(2024) - 연구목적: 농업유산의 발굴·지정 과정의 문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신청서 분석 - 현지조사 - FGI 인터뷰 - 현장심사 경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제도 개선 필요성 - 농업유산 지정 과정 검토 - 농업유산 발굴·지정 과정의 문제 검토 - 농업유산 발굴·지정 과정 개선방안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 연구자(년도): 진태승, 한수경(2026) - 연구목적: 농업유산지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고려사항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현장 조사 및 관계자 면담 - 전문가 자문(지구 범위 설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제도 검토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 공간관리 실태 분석 - 농업유산지구 설정 방향 - 농업유산지구 관련 제도 개선
------	---	--	---

출처: 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연구의 흐름



[그림 1-2] 연구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장

농업유산지구 관련 법제도 검토

1. 농업유산 관련 법제도 검토
2.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및 사례 검토
3. 소결: 농업유산지구의 제도적 쟁점과 시사점

1. 농업유산 관련 법제도 검토

1)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 (근거법) 농업유산 제도의 법적 근거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에 규정
 - 하위 규범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과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2호, 2025.4.17. 일부개정)이 있음
- (정의)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하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이러한 농업유산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것¹¹⁾

농업유산의 법적 정의(「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

- (지정 기준) 농업자원의 역사성·지속성, 고유한 농업기술·기법, 농업문화, 농업경관 등의 가치와 주민 참여·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등을 판단하여 지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별표 1])
- (지정 절차) 시장·군수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정 여부 결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내지 제2조의6)
 - 지정 신청 시 주민 동의를 경우 지정 대상지역(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야 함
 -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정 동의서는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하여야 함

11)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조2~3호

[표 2-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구분	항목	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농업문화의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농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출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별표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 (관리 체계)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협의 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시장·군수는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¹²⁾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계획의 내용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출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제2조의7

2) 농업유산지구(농촌특화지구) 제도

- (정의) 농업유산지구는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농촌 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제1항제7호)
- (지정 목적) 농업유산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중 하나로 전통농업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활용·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 보존 및 농촌

12)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 및 제16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제4항

환경 보전, 지역경제·정주여건 증진 등을 위해 지정

농업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농업유산지구는 전통농업 자원의 훼손과 단절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전·활용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을 증진하며, 농업생태·지형·경관 등 농촌의 환경적 특성을 보전하여 농촌다움의 가치와 일상적 농촌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 7-3-7 (1)

- (대상 지역) 비시가화지역 중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과 그밖에 농업유산의 보전가치가 높아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대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정되므로 농업유산지구는 농업유산 핵심자원 분포지역이나 실질적으로 보전·관리 및 활용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도록 규정(「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7-3-7)
 - 농업유산지구는 농촌다운 토지이용 특성을 보전, 육성, 관리하기 위한 지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지침」 6-1-1. ③)
 - 지구 지정 시 주민 역량, 관광자원화 잠재력과 파급효과, 농촌마을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도 고려

농업유산지구 지정 기준(「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별표 1] 7)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농업유산지구 우선 검토 지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 7-3-7 (2), (4))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중에서 기존 유산지정지역의 핵심지역
- 기타 시장·군수가 경관·생태·문화적 가치등 농업유산의 보전가치가 높아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유산지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농업기술, 농업경관, 공동체문화 등 고유한 자산의 유지·전승 가능성을 갖추어 다음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을 담당할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적 활동과 운영 실적을 보유한 지역
 - 농업유산이 관광·교육·지역브랜드·6차산업 등으로 확장·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가진 지역
 - 농업유산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주거지·농지·하천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촌마을과 유산을 연계하여 관광·교육·브랜드 등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

출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별표 1];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7-3-7

- (지정 절차) 농촌공간 기본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한 후, 시행계획 승인·확정 시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3조)
 -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7-4-3 (1))
 - 시행계획은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특별자치시장의 경우 확정
 - 법령상 주민이 제안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만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필요(시행령 제9조제1항)하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¹³⁾
- (관리 수단) 농업유산지구를 비롯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 등의 지정 의제를 통해 규제가 가능하며,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과 주민협정을 통해 지구의 개발·관리 시행
 -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제 가능(「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4조제1호)¹⁴⁾
 - 농업유산지구 지정 자체에 따른 법적 규제는 없으며, 지구 지정 후 주민협정을 체결하여 지구의 개발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음(「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2조제1항)
 -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농업유산지구 내 안내·해설, 교육·전승, 보전·관리 시설, 방문 편의시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등 권장시설 제시(「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7-3-7 (3))
 -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에는 지구 육성방향, 사업계획, 규제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 내용

1. 농촌특화지구 육성방향(지역의 여건 및 특성 포함)
2.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 : 종합구상도, 사업기간, 총사업비 및 세부사업별 사업명, 위치, 사업비, 사업계획의 세부사업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세부사업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제시)
3. 주민 등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4.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주민협정의 체결 결과(주민협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방안
6. 기대효과

출처: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7-4-3 (1) ②

13) 다만 절차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거나(시행계획 수립 지침 7-4-1)

14)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7-4-1. (4)에서는 의제에 따라 용도지구 등 지정 시 규제 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

[표 2-2] 지방자치단체 농업유산 관련 조례 현황

지자체	조례명	계획 및 지원 내용 중 지구 지정 관련 사항	비고
전남 구례군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11.11.18. 제정)	-	보호·육성
	구례군 산수유 노거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2.12.30. 제정)	-	보호·관리
전남 보성군	보성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 원 조례(‘15.10.1. 제정)	수출 전문 녹차단지 조성 지원, (보성전통차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홍보 지원)	산업 육성
경북 울진군	울진군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15.11.17. 제정)	금강송보전지역 지정 및 해제, 금강송 숲 가꾸기 사 업계획,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지원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북 완주군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20.12.31. 제정)	농업유산 핵심 및 주변 지구 지정 농업유산 지구 복원, 조성, 관리 및 정비 지원 농업유산 지구 경관 조성·관리 지원 생강굴 보전·관리 지원(생강굴보유주택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전남 장흥군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 (‘21.7.19. 제정)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특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경남 고성군	고성군 농업유산 돌봄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21.12.30. 제정)	핵심지역 및 우수·시범지구의 지정 관리 지원 핵심지역: 돌봄의 보전 가치와 분포 비율이 높은 곳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경남 창원시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외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22.4.29. 제정)	독외 감농업 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우수·시범 지구의 지정 관리	국가중요농업유산
전남 담양군	담양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22.9.21. 제정)	농업유산 지구별 보전 계획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 농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지원 농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지원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충남 서천군	서천군 한산모시 육성 및 지원 조례 (‘15.12.10. 제정)	-	산업육성
충남 금산군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 전 및 관리 조례 (‘22.12.6. 제정)	농업유산 핵심 및 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농업유산 지구 복원 및 조성, 관리 및 정비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경남 창원시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외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22.12.22. 제정)	홍보·체험·전시 및 판매 활동 거점 조성 유지 및 활성화 지역 및 우수·시범 지구 지정·관리	국가중요농업유산
전남 강진군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22.12.22. 제정)	농업유산 지구별 보전 계획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 농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지원 농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지원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경북 상주시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25.12.31. 제정)	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관리 유지 및 활성화 지역 및 우수·시범 지구 지정·관리 홍보·체험·전시 및 판매 활동 거점 조성	국가중요농업유산
(광역) 경상 북도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 (‘25.12.29. 제정)	농업유산지구 지정·운영 및 관리 사업	「농촌공간재구조화 법」에 따른 농업유 산지구 육성 지원

출처: 각 조례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주. 조례 제정일 순으로 정리

4) 농업유산 관련 법제도 검토의 시사점

- 첫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농업유산지구 제도는 동일한 농업유산 자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제도 간 연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체계인 반면, 농업유산지구는 시장·군수가 농촌공간 시행계획을 통해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을 농업유산지구의 대상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양 제도 간 사실상의 전제 관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절차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둘째, 농업유산지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부재
 - 시행령과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로 지구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
 - 그러나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구분 기준, 공간적 범위 설정의 원칙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은 제시되지 않음
- 셋째, 주민 동의 요건에 제도 간 비대칭으로 주민 간 혼란 야기 우려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되, 주민의 경우 행정리 단위 거주 주민 2분의 1 이상, 주민협의체의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이 필요
 - 반면 농업유산지구는 주민 제안에 의한 지정의 경우에만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며, 시장·군수 직권 지정의 경우 별도의 동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넷째, 농업유산지구의 관리 수단은 용도지구 의제와 주민협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구 지정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실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관지구·보호지구 등의 의제 지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어떤 유형의 용도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의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제도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미비
- 이상의 검토 결과는 농업유산지구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적 범위 설정 기준의 마련,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연계 방안 마련, 용도지구 의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핵심적 과제임을 시사

2.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및 사례 검토

1) 세계중요농업유산 개요

■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개요

-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 기후 변화, 지역사회 해체, 생물다양성 손실 등 가족농업과 전통 농업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여 시작한 프로그램¹⁶⁾
-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 공동체가 환경과 상호 적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전 지구적 수준에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뛰어난 토지이용시스템 및 경관”으로 정의되며, 살아있는 농업 시스템의 동적 보전(Dynamic Conservation)을 핵심 철학 삼고 있음¹⁷⁾



[그림 2-1] 세계중요농업유산 동적 보전 프레임워크

출처: FAO. (2005). GIAHS Strategic Framework. p.12

16) FAO. (2026).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Background. <https://www.fao.org/giahs/background/en> (검색일: 2026.1.25.)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17) FAO. (2026).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fao.org/giahs/frequently-asked-questions/en> (검색일: 2026.1.25.)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농업유산 시스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사회적 요구, 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접근 방식과는 차이 존재
- 단, 이러한 변화가 시스템의 고유한 기능과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동적 보존의 핵심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및 공간적 범위 설정 관련 사항

- 세계중요농업유산은 5가지 선정 기준(Selection Criteria)과 실행계획(Action Plan)을 평가하여 지정

[표 2-3] 세계중요농업유산 5가지 선정 기준 및 실행계획

구분	항목	내용
5대 부문	식량 및 생계 안정성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 지역 사회의 식량 및 생계 안정에 기여. 자급자족 및 반자급자족 농업과 같이 지역 사회 간 식량 공급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농업 유형 포함
	농업생물다양성 (Agro-biodiversity)	- 식량 및 농업에 작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의 다양성을 의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과 식량 및 유전 자원을 갖추어야 함
	지역 및 전통 지식 시스템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 오랫동안 축적된 전통 지식과 관습, 창의적인 적응 기술 및 관리 시스템 유지
	문화, 가치 체계 및 사회 조직 (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sations)	- 자원 관리, 식량 생산과 관련된 사회 조직(농업 시스템의 조직과 동적 보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 등), 가치 체계(자연 자원의 이용을 규제하는 관습법 등) 및 문화적 관습
	육지 및 해양 경관 특징 (Landscapes and Seascapes Features)	-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경관. 이는 오랜 역사적 지속성과 이를 만들어낸 지역 사회경제 시스템과의 강한 연관성을 특징으로 함
	실행계획	- 위험 요인 분석, 거버넌스 구축, 보존 및 활용 조치, 자원 조달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출처: FAO. (2026).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Become a GIAHS. <https://www.fao.org/giahs/become-a-giahs/en> (검색일: 2026.1.25.)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세계중요농업유산 구역에 포함 가능한 공간적 범위¹⁸⁾
 -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 가이드라인(FAO, 2023)에서는 제안 대상지를 5가지 선정 기준이 모두 구현·적용되는 지역으로 보았으며, 경작지뿐 아니라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생태계 서비스와 같은 유익한 기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농민들이 수 년 동안 일하고 탐구해 온 주변 자연환경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다음 경우 세계중요농업유산 구역에 포함 가능
 - : 전통적 농업지역과 밀접하게 통합·연계되어 있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세계중요농업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구역(the core area)에서 배제할 수 없는 토지(예: 산림 내 임시 경작지, 이동목축 경로, 농림복합 경작지, 농경지와 결합된 하천 경관, 유산 이정표, 농촌 주거지 등)

18) FAO. (2023). Guidelines for Developing a GIAHS Proposal Document, p.9.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넓은 경계를 요구하는 문화, 농업 생물다양성, 유산, 경관 또는 동적 보전 활동과 관련된 지역

- 세계중요농업유산 주변 지원구역(the surrounding supporting area)의 추가 설정 가능¹⁹⁾
 - 지원구역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명확한 규제와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잠재적 훼손 행위나 개발 압력과 세계중요농업유산 구역 사이의 완충 및 전이 공간 역할 수행. 이를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고유한 특성이 유지되도록 지원

- 주변 지원구역 설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각 농업유산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2) 민관 협의체와 인센티브 기반의 관리: 일본 니시아와 급경사지 농업 시스템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주요 특성²⁰⁾

- 니시아와 급경사지 농업 시스템(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은 도쿠시마현(徳島県) 니시아와 지역에 위치한 산악지대에서 최대 40도에 달하는 급경사면 경사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독특한 농업 방식을 400년 이상 유지

[표 2-4] 일본 니시아와 급경사지 농업 시스템의 5대 부문 주요 특징

구분	항목	내용
5대 부문	식량 및 생계 안정성	- 여성·고령자 중심의 소규모 농가가 다양한 곡물과 채소를 재배 - 자가 소비 외 친인척 이웃과 나누거나 쌀·육류와 교환함으로써 비화폐 경제 효과 창출 - 메밀, 고사리, 차, 과수, 채소 등을 JA(농협)와 약 30개 직거래 시장에 출하해 현금 수입도 확보
	농업생물다양성	- 기장·조·피·수수·메밀 등 다수의 재래 품종이 존재하여, '유전자 은행' 기능 가짐 - 농지 주변 초지는 카야(kaya, 억새류) 공급원이자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초지 관리 자체가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경사지는 다양한 곤충 조류의 중요한 서식 환경 제공
	지역 및 전통 지식 시스템	- 건조한 카야를 잘게 잘라 토양에 갈아 넣고 표면에 덮는 독자적 기법으로 ①토양·비료 유실 방지 ②유기물 공급 ③지온 균일화 ④토양 구조 보전 ⑤수분 유지 ⑥잡초 억제 효과 창출 - 등고선 방향 이랑 조성으로 빗물 차단, 돌담 축조로 경사 완화 및 반사열 활용 등 배수 침식 관리 기술
	문화, 가치 체계 및 사회 조직	- 각 가정은 곡물·채소·과일을 햇볕 건조 등으로 저장해 겨울을 나며, 지역 특산품으로도 유통 - 각 지구에서 대대로 이어온 다양한 농업 축제와 행사는 기후제 등 의식적 역할 외에도 주민 간 유대 강화 기능을 담당하며, 고된 농작업의 동기부여 역할 수행
	육지 및 해양 경관 특징	- 주거지·밭·초지·산림이 경사면에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일체화된 독특한 모자이크 경관 형성 - 수확·건조한 카야를 원뿔형으로 쌓은 코에구로(koeguro)는 연중 볼 수 있는 상징적 경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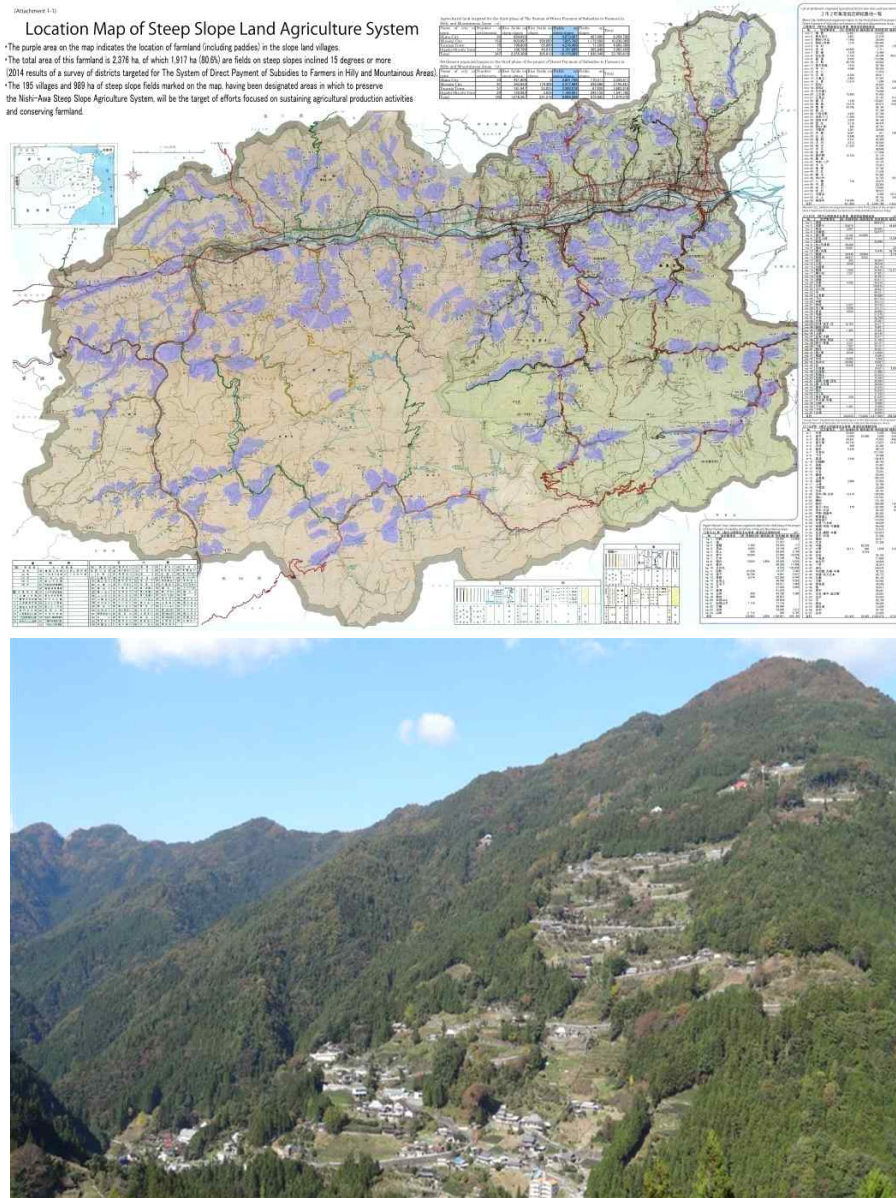
출처: FAO. (2026).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Japan. <https://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japan-nishi-awa-agriculture-system/en> (검색일: 2026.3.20.)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19) FAO. (2023). Guidelines for Developing a GIAHS Proposal Document, p.9.

20) Tokushima-Mt. Tsurugi GIAHS Promotion Association. (2018).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GIAHS proposal.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면적 및 공간 분포 특성

- (면적) 약 1,405.88km² (농경지: 약 9.89km², 산림: 약 1,191.30km²)
- (공간 분포 특성) 4개 기초자치단체(미마시, 미요시시, 쓰루기초, 히가시미요시초)에 걸쳐 해발 약 100~900m 산악지대에 200여 개 마을이 흩어져 분포하며, 각 마을은 급경사면에 붙어 있는 듯한 독특한 경관을 형성



[그림 2-2] 일본 니시아와 급경사지 농업 시스템의 공간적 특성
 출처: Tokushima-Mt. Tsurugi GIAHS Promotion Association. (2018).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GIAHS proposal. p.46; <https://giahs-tokushima.jp/steepslopeagriculture> (검색일: 2026.3.20.)
 주: 지도상의 보라색 영역이 경사지 마을에 있는 농경지 위치

■ 토지이용 관리 방식: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 협의회 기반 협력

- ‘도쿠시마 츠루기산 세계농업유산 추진협의회(徳島剣山世界農業遺産推進協議会)’²¹⁾를 기반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관리 유도²²⁾
 - (농지 보전 및 맞춤형 관리) 약 200개 마을별 상황에 맞춘 보전 방안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농지보전 어드바이저 20명을 배치. 직불제를 통해 경작 면적을 확대하고 방치된 농지를 경작지나 초지로 복원하며, 위탁영농 및 공동생산 방식 도입
 - (초지의 다각적 관리) 초지는 카야의 공급원이자 생물다양성의 핵심 공간으로, 주민 뿐 아니라 기업·대학·관광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관리 체계 구축
 - (유전 자원 보존 및 곡물 생산 확대) 15종의 재래 곡물을 도쿠시마 농림수산기술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메밀 경작 면적 및 곡물 생산자 조합원 수 확대
 - (빈집 자산화) 빈집 활용 수를 60곳까지 확대하여 숙박시설 등으로 개조
 - (PES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및 보전 기금) 농지가 산림 내에 분산 배치되어 시장 경제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보전 은행을 설립하고 클라우드펀딩·기업 기부·고향세를 재원으로 활용, 니시아와 브랜드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판매 수익 일부를 농업 시스템 보전기금으로 환원
- (시사점) 농업경관이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분포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 한정된 구역 설정이 어려우므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지정·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역 협의회 구성이 필수적

3) 생산 규정과 연계한 중층적 경관·세부구역 관리: 이탈리아 소아베 전통 포도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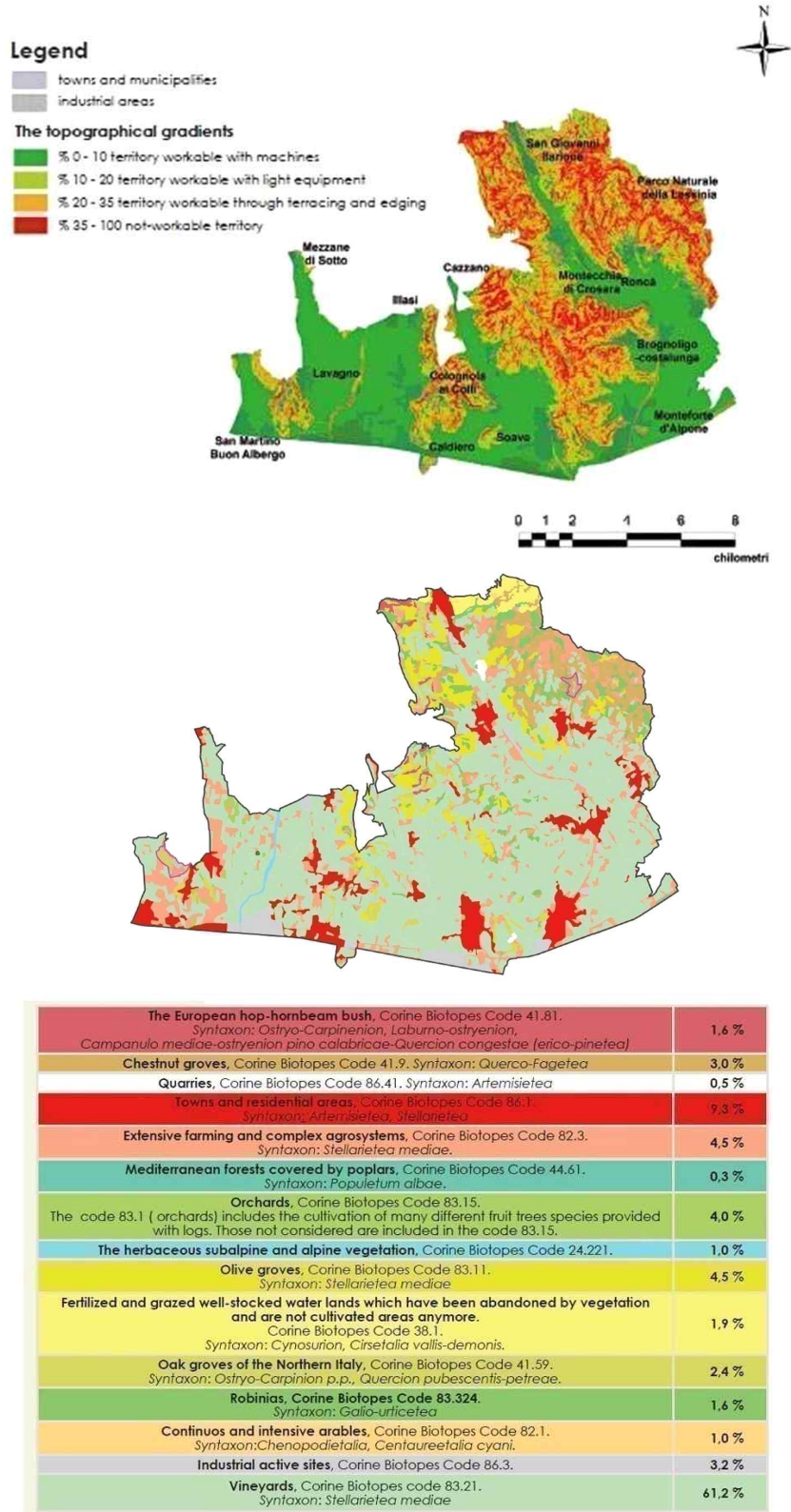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주요 특성²³⁾

- 이탈리아 소아베 전통 포도밭(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은 토착 품종(가르가네가, 트레비아노 디 소아베)을 페르골라 베로네제(Pergola Veronese)라는 전통 수형으로 재배하는 역사적 농업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년 동안 3,000여 가구에 소득 제공

21) 협의회는 201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구성원은 4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농협(JAMI, JA아와미요시)였으나, 2018년 2월 도쿠시마현, 도쿠시마대학교, 국립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가 정회원으로 합류함. 2018년 7월에는 소라노사토, 지역 무역회사 아와후도, 미마 청년상공회의소, 아와 이케다 상공회의소가 정회원이 되었으며, 각 지역 농업 진흥 단체들도 지원 회원으로 합류하여 점차 조직이 확대됨 (にし阿波の傾斜地農耕システム, (2026). 徳島剣山世界農業遺産推進協議会とは. <https://giahs-tokushima.jp/aboutus>, 검색일: 2026.3.20.)

22) Tokushima-Mt. Tsurugi GIAHS Promotion Association. (2017).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GIAHS Conservation Plan (2017-2021), pp.7-15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3) Soave Consorzio Tutela. (2018). Soave Traditional Vineyards. GIAHS proposal. Itali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Policies (MiPAAF).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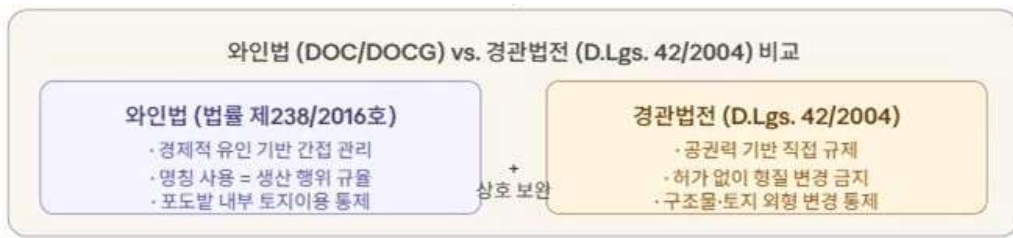


[그림 2-4] 이탈리아 소아베 전통 포도밭의 공간적 특성

출처: Soave Consorzio Tutela. (2018). Soave Traditional Vineyards. GIAHS proposal. Itali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Policies (MiPAAF). pp.45-46

■ 토지이용 관리 방식: 문화유산·경관법전, 와인 원산지 명칭 제도가 경관관리 도구로 기능²⁴⁾

- 소아베 구릉 포도밭이라는 동일 공간에 문화유산·경관법전의 보호구역 지정과 와인 원산지 명칭 제도의 생산구역 경계가 중첩 적용
 - 문화유산·경관법전은 개발·훼손 행위를 차단하는 기능, 와인 원산지 명칭 제도는 전통 농업경관을 유지·재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
 - 와인 원산지 명칭 제도가 미치지 않는 비농업 개발 행위(건축·토목 등)는 문화유산·경관법전이 보완하고, 문화유산·경관법전이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일상적 농업 관행(수형 유지·품종 관리 등)은 와인 원산지 명칭 제도가 관리하는 역할 분담 구조



[그림 2-5] 문화유산·경관법전과 와인법(원산지 명칭 제도)의 상호 보완을 통한 경관관리 구조
출처: 연구진 작성

[표 2-6] 문화유산·경관법전과 와인법(원산지 명칭 제도) 비교

항목	문화유산·경관법전	와인법 및 생산규정(원산지 명칭 제도)
규율 목적	경관·문화유산의 공익적 보전 (국가 정체성 수호)	포도 재배·양조 품질 관리 및 원산지 진실성 보장 (경관 보전은 부산물)
규율 수단	공권력 직접 규제(허가·금지·제재)	경제적 유인 간접 규제(명칭 사용권 조건화)
핵심 조문	제134조(경관 자산 정의), 제136조(현저한 공익 선언), 제142조(법령상 당연 보호), 제146조(경관 허가)	제29조(DOC·DOCG·UGA) 근거, 제7조(영웅적 포도원 보전), 제64조(연간 통제 검증) / 생산규정(재배·수확 의무)
관할 기관	문화부 산하 Soprintendenza(감독청) / 베네토 주 / 기초자치단체	이탈리아 농업부(MASAF) / Consorzio Tutela Vini Soave / 공인 통제기관
규제 대상 행위	토지 외형 변경(포도밭 조성·제거, 테라스 신설, 구조물 설치, 지표면 포장, 수목 벌채 등 외형 변경 일체 → 사전 경관 허가 필요)	농업 생산 행위(품종·재배형태·수확량)
소아베 적용 범위	제136조 선언 구역(Colli Veronesi 일부), 제142조 하천변 150m·산지 구역, 베네토 주 PTRC(지역 경관 계획) 경관 앰비트 내 포도밭 전반	Soave DOC 13개 코무네에 위치한 포도원 전체 (생산규정 가입 농가)
위반 제재	원상복구 명령 형사 제재(제167조)	DOC·DOCG 명칭 사용권 박탈 시장 접근 차단

출처: 연구진 작성

24)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D.Lgs. 42/2004; Regulation (EU) No. 1308/2013, Testo Unico del Vino, Legge 238/2016; Disciplinare Di Produzione Dei Vini A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Soave"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문화유산·경관법전(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D.Lgs. 42/2004)은 이탈리아 헌법 제9조의 문화유산·경관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법전으로, 이에 따라 소아베 구역은 경관구속 대상이며, 해당 구역 내 건축물 등의 외관 변경·신축은 경관허가(autorizzazione paesaggistica) 필요
- 와인 원산지 명칭 제도(DOC/DOCG/UGA)가 사실상 경관관리 도구로 기능
 - 와인 생산·유통 체계가 재배 허용 품종, 재배 및 가공 방식, 양조 방법 등을 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물리적 형태나 경관이 관리되는 경향
 - EU 규칙-이탈리아 와인법-개별 생산규정의 3단계 위계 구조를 가짐
 - ※ (EU 규칙 제1308/2013호, CMO) 포도주 원산지보호명칭(PDO) EU 차원 등록 체계
 - ※ (이탈리아 법률 제238/2016호, 와인법) DOC/DOCG 인정, 생산규정, UGA 제도 근거(제29조)
 - ※ (Soave DOC 생산규정) 허용 품종, 재배방식, 수확량, 33개 UGA 목록·경계 제시



[그림 2-6] EU 규칙, 이탈리아 와인법 및 생산규정 간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 UGA(Unita Geografiche Aggiuntive)의 경관관리 기능: UGA는 와인 품질 등급이 아니라 ‘포도밭의 형태적·토양적·생리학적 특성의 유리한 조합’을 지칭하는 공간 단위로서, 이 체계의 핵심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관 유지의 직접 연동에 있음. UGA 표시 와인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형성하므로, 생산자는 해당 구역의 전통적 재배방식을 유지할 경제적 동기를 갖게 됨
- 생산자 조직인 소아베 와인보호컨소시엄(Consorzio Tutela Vini Soave)이 중심 역할 수행: DOC/DOCG 생산규정 관리, 품질 인증, 국제 마케팅, GIAHS 신청·관리 등을 총괄하며, 소아베 와인의 약 70%를 생산하는 협동조합과 긴밀히 협력

[표 2-7] 이탈리아 소아베 전통 포도밭의 생산규정을 통한 세부 구역 관리

등급	면적	위치	특성
Soave DOC	~7,000ha	13개 코무네	전체 생산구역, 현대적 확장 포함
Soave Classico DOC	~1,500ha	소아베·몬테포르테달포네 구릉지	1931년 확정 역사적 핵심구역, 경계 불변
Soave Superiore DOCG	Classico 내	Classico + Colli Scaligeri	최고 품질 등급, 2002년 승인
33개 UGA	전체의 38%	DOC 내 소구역	2019년 승인, 미시적 테루아 구분

출처: Disciplinare Di Produzione Dei Vini A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Soave"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시사점) 지리적표시제 및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경관관리 방식, 협동조합 보상체계를 통한 경작 포기 방지
 - (지리적표시제와 연계한 경관관리)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의 생산규정에 전통 재배방식·경관요소 유지를 명시하여 경관관리 효과 기대
 - (생산자 조직의 경관관리 역할 강화) 영농조합법인·품목별 생산자단체가 단순 생산·유통을 넘어 경관관리·문화보전 주체로 육성될 수 있음
 - (소구역(UGA 유사) 세분화를 통한 미시적 관리) 농업유산지구 내 토양·지형·미기후에 따른 소구역을 식별하고 브랜드·인증과 연계하면 품질 차별화와 경관 보전을 동시에 달성 가능
 - (협동조합 보상체계의 도입) 시장가격 변동에 취약한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메커니즘은 경작 포기를 방지하고 경관 연속성을 유지 가능성

4) 유산의 가치 보전 및 훼손 상태에 따른 보호 수준 구분: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Horta de Valencia) 역사적 관개시스템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주요 특성²⁵⁾

-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역사적 관개시스템(2019년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은 도시와 인접한 농업지대로서, 1,200년 이상 지속된 관개 시스템과 수로(acequias)를 중심으로 전통적 물 재판소와 물 배분 규칙 등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발렌시아 대도시권의 식량 공급에 기여
 - 역사적 관개시스템을 유지·계승해 도시 주변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생태·문화적 가치를 함께 보전하려는 목적을 가짐

25) València City Council. (2019). Historical Irrigation System at l'Horta de València. GIAHS proposal.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of Spain(MAPAMA).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표 2-8]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역사적 관개시스템의 5대 부문 주요 특징

구분	항목	내용
5대 부문	식량 및 생계 안정성	- 전통 수리시설을 기반으로 한 다모작 채소·과수·쌀 재배와 소규모 가족농(약 6,000개 농가, 0.5~1ha 수준)이 도시권에 신선 농산물을 공급 : 도시화 압력과 함께 소규모 농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 압박과 개발 계획 부재, 관개 원에 시스템에 대한 지원 부재로 유희화된 농지가 1,800헥타르 이상으로 추산
	농업생물다양성	- 약 50여 종의 채소·과수·곡물·쌀·타이거넛(xufa) 등 다양한 작물이 소규모 필지 모자이크와 관개망을 통해 유지되며, 다수의 토종·지역적 품종을 보존 - 특히 다른 유럽 지역에서 보기 힘든 타이거넛과 수세기 이어져 온 지역 쌀 품종 재배
	지역 및 전통 지식 시스템	- 수세기 동안 지속된 중력식 관개 기술, 물 배분 규칙(turno), 전통 농기구·작업법을 유지·전승
	문화, 가치 체계 및 사회 조직	- 물 재판소(Tribunal de las Aguas)와 레알 아세키아 데 몬카다(Real Acequia de Moncada)를 중심으로 하는 관개 자치제, 발렌시아어 사용, 유통경로가 짧고 시내로의 직접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도매시장(La Tira de Comptar) 운영
	육지 및 해양 경관 특징	- 지중해 연안, 투리아 강변, 알부페라 강변 등 여러 환경이 결합된 형태의 경관을 형성하며, 역사적 관개망과 농지 모자이크, 알부페라 자연공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농촌건축(알케리아스·바라카스 등), 농경축제와 음식문화(파에야 등)가 하나의 문화경관을 형성

출처: Valencia City Council. (2019). Historical Irrigation System at l'Horta de Valencia. GIAHS proposal.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of Spain(MAPAMA). pp.22-24, 50-51, 62, 74-92, 106-116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면적 및 공간 분포 특성

- (면적) 약 23,000ha (비도시지역은 총 17km²으로 이 중 약 10km²가 실제 경작되고 있으며, 역사적 오르타 지역²⁶⁾에 8km², 자연공원 내 논 지역에 2km² 위치)
- (공간 분포 특성) 오르타 관개시스템은 투리아 강 하류를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으며, 8개의 주요 운하(Acequias)가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며 농토에 물을 공급. 강 상류에서 하류, 주 운하에서 세부 지류로 이어지는 위계적 수로망을 통해 도시와 농촌, 해안의 알부페라(Albufera) 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구조 형성



[그림 2-7]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의 물 배분 시스템

출처: València City Council. (2019). Historical Irrigation System at l'Horta de València. GIAHS proposal. p. 137 재인용

26) 역사적 오르타 지역(the Historical Horta)은 13세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관개 시스템이 핵심을 이루는 농업지역으로, 발렌시아시가 관할하는 오르타 노르드(Horta Nord), 오르타 우에스트(Horta Ouest), 오르트 수드(Horta Sud) 지구 등을 포함(Valencia City Council, 2019, p.28)



[그림 2-8]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역사적 관개시스템의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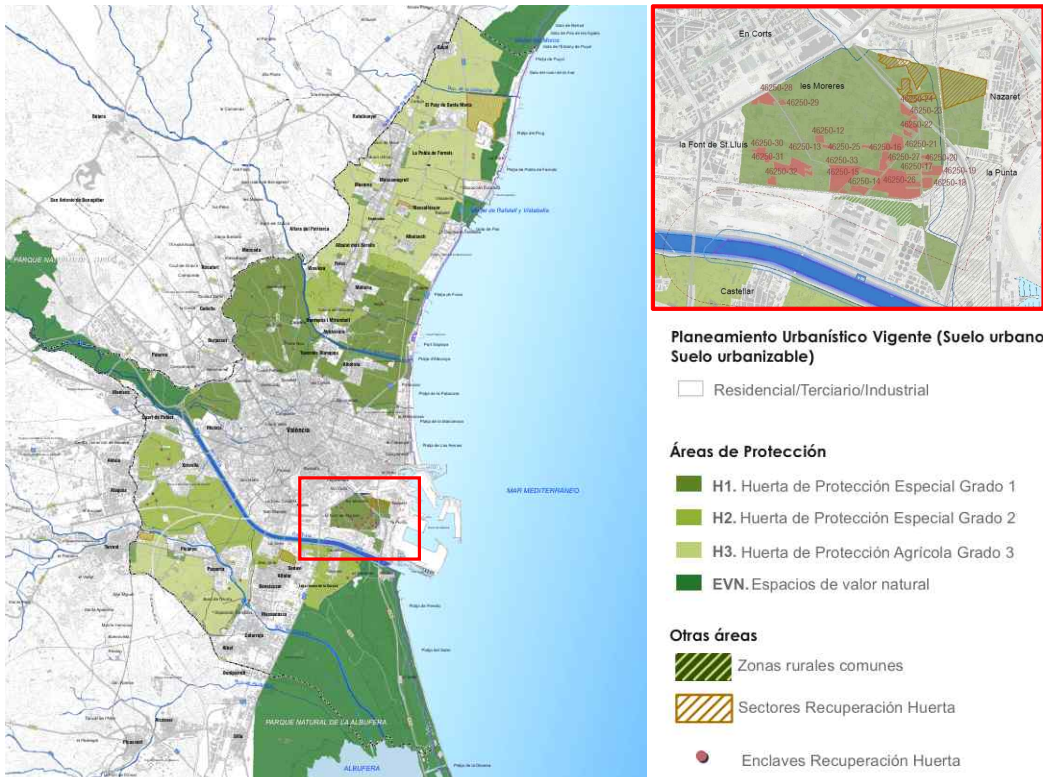
출처: Criado. (n.d.). Plan de la Huerta de Valencia. Generalitat Valenciana. p.12; FAO. (2026). Historical Irrigation System at l'Horta de València, Spain. <https://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spain-valencia-historical-irrigation-system/en> (검색일: 2026.3.20.)

■ 토지이용 관리 방식: 보전 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 구역제²⁷⁾

- 발렌시아는 2018년 오르타법(Ley 5/2018, de la Huerta de València) 및 오르타 영토 행동계획(Decreto 219/2018, PAT Horta)을 제정하여, 농업유산 가치 보전 및 훼손 상태에 따른 보호 수준을 구분·관리
 - 오르타법이 '왜,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법(목표, 원칙, 도구 정의)이라면, 영토행동계획(PAT Horta)은 이를 바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규제계획 역할을 담당
- 오르타법에서는 오르타 지역의 동적 보전을 위하여, 생산 활동의 유지, 농업 종사자의 생활 조건 개선, 도시화 압력에 맞서 오르타 보전을 촉진하는 토지이용규제 체계와 농업 활동의 관리 및 재정 지원 조치를 마련
 - (핵심 내용) 오르타 지역의 구성 요소(농업인, 물 재판소 및 관개 공동체, 농지, 관개유산, 건축, 생태계, 가로망, 토지구획, 농업활동 등) 정의(제6~17조), 상위계획으로서 '오르타 영토행동 계획(PAT Horta)' 법정화(제18조), 토지이용·시설·인프라에 대한 기본 규율(제19~24조), 유희농지·회복지에 대한 제도 도입(제25~37조)
 - (회복지, Enclaves/Sectors de Recuperació) 오르타법은 훼손지를 제한적 개발권 교환으로 재농지화하는 도구를 두었다는 점에서 특징적. 훼손지 회복을 위해 단순 규제(개발금지)가 아니라, 제한적 개발(1/3 이내)과 함께 농지 복원을 결합한 회복지(회복 엔클레이브, 회복 섹터) 제도를 도입하고, 유희농지에는 강제 임대·수용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기능 이행 장치를 마련

27) '발렌시아 오르타법'(Ley 5/2018, de la Huerta de València, Última modificación: 29 de diciembre de 2025)과 '발렌시아 오르타 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에 관한 영토행동계획'(Decreto 219/2018, Plan de acción territorial de ordenación y dinamización de la Huerta de València)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오르타 영토행동계획은 오르타법 제18조에 근거한 상위 영토계획으로, 오르타 지역의 녹색인프라·토지이용·시설·인프라 지침을 구체화하고, 모든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을 이 계획에 적합하도록 강제
 - (핵심 내용) 오르타 경관단위·보호농지 등급(H1, H2, H3)·자연가치지역(Espacios de Valor Natural)·연결축 등 공간구조 설정(제11~21조),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시설 허용·제한 규정(제4편, 제36~47조), 도시성장·회복지 설정과 정합성 기준(제5편), 인프라(도로·철도·에너지·수자원·에너지시설 등) 경관통합 지침(제6편), 공공이용·관광·교육 이용 지침(제7편) 등을 통해 오르타법의 원칙을 ‘공간화’하는 역할을 수행
 - (보호농지, Horta de Protección Especial) 오르타법의 ‘농업 가치가 높은 토지는 비도시지역 보호농지(ZRP-AG)로 분류하고 도시개발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제29조)는 규정에 대해, 오르타 영토행동계획에서는 보호농지를 H1(1급 특별 보호농지), H2(2급 특별 보호농지), H3(3급 특별 보호농지)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허용·제한용도·시설 기준(면적, 높이, 이격거리, 건폐율, 경관·환경조건)을 상세히 규정



[그림 2-9]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의 보호농지 및 회복지 구분

출처: masqueingenieros engineering & consultng, <https://masqueingenieros.com/pat-de-la-huerta-valencia/>(검색일: 2026.3.20.)

[표 2-9]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지역의 보호농지 및 회복지 관련 주요 지침 내용

구분	정의 및 역할	주요 공간 관리 지침 및 규제
보호농지	H1 (1급 특별 보호농지)	- 가장 핵심적인 전통 오르타 지역으로, 농업·경관 가치가 가장 높은 보호농지 - 기본 용도는 농업만 허용 - 관개수로·농로·필지 구조 변경 금지 - 신규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기존 전통 건축물의 소규모 보수·부분 증축은 조건부 허용
	H2 (2급 특별 보호농지)	- H1보다 관개 시스템과 작물 면에서 더 큰 변화를 겪은 지역으로, 보전과 복원이 함께 필요한 보호농지 - 기본 용도는 농업 유지 - 관개수로·농로 구조를 바꾸는 필지 재편 금지 - 경관·전통 구조 회복을 전제로 제한적 농업시설·보완 용도 허용 - 관광·식당·숙박·레저 등 3차 용도는 기존 전통 건축물 재활용 방식으로 제한적 허용
	H3 (3급 특별 보호농지)	- 상대적으로 훼손이 크고, 감귤류 나무를 비롯한 수목 피복률이 가장 높은 보호농지 - 여전히 기본 용도는 농업 - 관개 방식 변경·필지 재편·일부 비농업 용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허용 범위 부여 - 온실·레저·관광·공공시설 등 수용 여력이 가장 큼. 다만 필지 상당 부분(대체로 2/3 이상)을 경작지로 유지해야 하고 건폐율·높이는 규제 - 신규 건축 허용 범위는 H1, H2보다 넓지만 높이, 건폐율, 용도 등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 - 가축 사육은 H3에서만 허용
회복지	회복 엔클레이브 (필지 단위 회복지)	- 이미 훼손·방치된 오르타 필지(붕괴·노후 건축물, 포장·불투수층 등) 중, 토양·관개망 복원 비용이 농업 수익만으로는 상환 불가능해 부분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복원하는 회복지 - 전체 면적의 최소 2/3는 실제 경작 가능한 농지로 복원·유지, 최대 1/3만 주거·3차 용도 허용, 그 안에서도 건축 면적·높이에 엄격한 상한 적용
	회복 섹터 (구역 단위 회복지)	- 도시화된 시가지와 인접한 넓은 지역 중, 일부는 훼손·방치되고 일부는 여전히 경작되는 복합 구역에 대해, 일부는 도시개발, 나머지는 장기 보호농지로 만드는 회복지 - 전체 면적의 최소 2/3는 실제 경작 가능한 농지로 복원·보전, 최대 1/3에서만 주거·서비스 등 도시적 이용 허용 - 구역 내 농지 복원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도시적 이용 허용, 이에 농지 복원 공사가 도시개발과 동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수행됨

출처: ‘발렌시아 오르타법’(Ley 5/2018, de la Huerta de València, Última modificación: 29 de diciembre de 2025), 제16조~제51조; ‘발렌시아 오르타 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에 관한 영토행동계획’(Decreto 219/2018, Plan de acción territorial de ordenación y dinamización de la Huerta de València) 제30조~제37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시사점) 등급제 기반 차등적 토지이용 관리 및 적극적 재생을 위한 회복지 개념 도입
 - (등급제 기반 차등적 토지이용 관리) 농업적 생산성, 역사적 가치,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토지이용 관리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허용되는 행위와 규제 수위를 차별화하여 주민의 수용성 제고
 - (단순 보전이 아닌 적극적 재생을 위한 회복 개념 도입) 기능이 약화된 농업유산 지역을 회복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순 보전을 넘어 휴경지 재경작, 전통 관개시설 복원, 경관 재생 등 실질적 복구 유도

5) 우리나라 농업유산지구 설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

■ 공간적 범위 설정 측면

- (공간적 가치 기반의 유연한 경계 설정 필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5대 기준(식량 및 생계 안정성, 농업생물다양성, 지역 및 전통 지식 시스템, 문화가치 체계 및 사회 조직, 육지 및 해양 경관 특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단순 행정구역이나 일률적 영역 설정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 시스템이 가진 독창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유연한 경계 설정
- (핵심구역 설정) 주민의 수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
- (토지이용 관리 우선순위 검토) 토지이용 관리 관점에서 토지 보존 또는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검토하여 실질적 보전 효과를 도모
 - 이농·휴경으로 훼손된 전통 농지, 수계 연결성 회복 필요 구역, 완충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구역 등

■ 토지이용 관리 측면

- 일본 니시아와,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이탈리아 소아베 사례를 토지이용 관리 관점에서 살펴보면, 각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 니시아와) 토지이용 규제 없이 직불제·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보전 기금·브랜드 인증 등 인센티브로 관리 유도
 - 일본 니시아와의 GIAHS 지정 범위는 4개 기초자치단체 전역으로, 핵심 농경지를 특정 필지 단위로 구획·규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산재형 경관을 형성
 - 니시아와 사례에서는 구역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비농업 개발 통제 등 기본적인 토지이용 관리는 일본 국토계획 법제에 의존
- (이탈리아 소아베) 생산 규정을 간접적 토지이용 관리수단으로 활용
 - 소아베는 별도의 법정 토지이용 계획 없이, DOC·DOCG·UGA 경계선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는가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관리(소아베 클라시코 구역(~1,500ha) 경계는 1931년 획정 이후 불변으로, 사실상 '역사 핵심 농업지구' 경계 보존 효과)
 - 다만 포도밭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와인법이 아닌 경관법전(D.Lgs. 42/2004)을 따라야 하므로, 농업생산 규범과 토지이용 규제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한계 존재
-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자치법과 계획을 통해 정교한 토지이용 관리제도 마련
 - 발렌시아 지방정부 차원에서 오르타법 및 영토행동계획을 마련하여, 농업유산에 대한 단순한 보호 선언에 그치지 않고 보호농지와 회복지를 통해 농업유산을 적극적으로

로 보전하고 유지관리

- 세 가지 사례는 차별적인 공간 구조(산재형, 집중형, 연속형)와 토지이용 관리 방식(자유형, 간접형, 규제형)을 보여주며,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
 - 한국의 농업유산지구 제도 설계에서도 개별 농업유산의 공간 분포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토지이용 관리 방식 및 관리 주체 선택 필요

[표 2-10] 일본 니시아와,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이탈리아 소아베 사례의 토지이용 관리 방식 차이

항목	일본 니시아와	이탈리아 소아베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
공간 분포 특성	산재형 (약 200개 마을 산재)	집중형 (구릉지 포도밭)	연속형 (도시 주변 관개 농업지대)
토지이용 관리 방식	자유형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 협의체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중심 관리, 규제 수단은 기본 법제에 의존)	간접형 (경관관리를 통해 토지이용 간접 관리, 특히 생산규정으로 영농 행위를 유도하여 경관 및 토지 보전)	규제형 (법정 구역제로 허용·금지 행위를 직접 통제)
토지이용 규제 근거	해당 구역에 대한 별도 규제 없음	EU규칙 1308/2013 + 이탈리아 와인통합법(238/2016)	오르타법(Ley 5/2018) + 오르타 영토행동계획(Decreto 219/2018)
구역 세분화	없음 (행정구역 전역)	DOC→Classico→DOCG→33개 UGA 위계	보호농지(H1/H2/H3) + 회복지(회복 엔클레이브/회복 섹터)
비농업개발 통제	기존 국토계획 법제에 의존	문화유산·경관법(D.Lgs. 42/2004) 적용	오르타 영토행동계획에서 직접 규제 적용
농업용도 이탈 대응	브랜드 인증제도·관광 인센티브	DOC 내 포도 외 용도전환 억제	회복지 + 재농업화 지원
관리 주체	광역 협의회 (자치단체+농협+대학 등)	와인보호 컨소시엄 (생산자 조직)	Consell de l'Horta (법정 기구)

출처: 연구진 작성

3. 소결: 농업유산지구의 제도적 쟁점과 시사점

■ '포괄적 선언'과 '선별적 공간관리' 간의 제도적 연결 구조가 부재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농업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선언의 성격을 갖는 반면, 농업유산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수행하는 공간관리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그러나 두 제도가 동일한 농업유산 자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정 주체, 지정 절차, 관리 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포괄적 유산 지정에서 선별적 공간관리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절차적·제도적 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탈리아 소아베의 경우 문화유산·경관법전과 와인 원산지 명칭 제도가 동일한 공간에 중첩 적용되나 각 제도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
 -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는 자치법과 영토행동계획이라는 단일 제도 체계 내에서 보전 대상 선별과 토지이용 관리를 일원화
 -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 지정(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선별적 공간관리(농업유산지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 제도를 연결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

■ 농업유산지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핵심지역 판별 기준 불명확)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은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로 지구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자원'의 판별 기준과 공간적 범위 특정 기준은 부재
 - 국가중요농업유산 자체가 제주발달이나 금산 인삼농업처럼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토지이용 관리 단위인 농업유산지구로 전환할 때 공간적 범위의 축소 및 특정 방법이 핵심적인 실무 과제
 -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 가이드라인(FAO, 2023)은 경작지뿐 아니라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주변 자연환경과 전통적 농업지역에 밀접히 통합·연계된 토지(산림 내 임시

경작지, 농촌 주거지, 하천 경관 등)까지 핵심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변 지원구역 설정도 허용하고 있어 참고할 만함

- (보전과 활용 간의 균형)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자원 분포지역과 실질적으로 활용·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공간 범위 설정 시 두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쟁점
 -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가 보호농지를 3등급(H1, H2, H3)으로 세분화하여 농업적 가치·역사적 중요도·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적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하고, 훼손지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발권 교환과 재농지화를 결합한 회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점은, 보전과 활용의 공간적 분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공간적 관계 설정) 농업유산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공간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의제의 유형과 수준) 농업유산지구 지정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어떤 유형의 용도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의제 지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수준과 권장·제한시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독자적 공간 구분 방식) 현장에서는 이미 "핵심 및 주변 지구"(금산군·완주군), "핵심지역 및 우수·시범지구"(고성군·창원시), "농업활동 거점"(창원시),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담양군·강진군) 등 각 조례에서 독자적인 공간 구분 개념을 규정. 이들 개념과 범위를 법령 및 지침 체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정합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 방식이 고려되지 않음

-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경계 설정 방식과 토지이용 관리 방식이 달라짐
 - 일본 니시아와처럼 200여 개 마을이 산악지대에 흩어져 분포하는 산재형 경관에서는 특정 필지 단위의 구획·규제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관협의체 주도로 인센티브 기반의 토지이용 관리가 용이
 - 이탈리아 소아베처럼 구릉 포도밭이 밀집한 집중형 경관에서는 생산 규정이나 브랜드 인증을 통한 간접적 경관관리가 효과적
 - 스페인 발렌시아 오르타처럼 도시 주변에 관개 농업지대가 연속적으로 펼쳐진 연속형 경관에서는 법정 구역제를 통한 직접적 규제가 가능
- 국가중요농업유산 역시 면적 편차가 크고 다양한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어, 획일적인 범위 설정 방식이 아닌 공간적 특성에 대응하는 유형별 접근이 필요

■ 농업유산의 '동적 보전' 철학과 가치순환 구조를 공간관리 제도에 반영할 필요

-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프로그램은 농업유산 시스템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사회적 요구·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동적 보전(Dynamic Conservation)을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음
- 이는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접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농업유산지구가 단순한 보전 규제 구역이 아닌 생산 활동의 지속, 농업인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
 - 국내 법제에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농업유산지구의 목적으로 "농업유산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정주여건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5대 부문(표2-3) 역시 농업유산의 가치가 식량·생계 안정(생산), 전통지식(가공·전승), 문화·사회조직(공동체·정주), 경관(공간적 기반) 등 복수의 차원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가치의 다차원성은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이 단일한 토지이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복수의 공간 기능을 통해 실현됨을 시사
- 동적 보전은 보전과 활용(개발)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농업유산 순환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김지효·정명철, 2020)
 - 김지효·정명철(2020)은 국내외 농업유산 사례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동적 보전의 실행 영역을 ① 농업활동 유지 및 토지 보유, ② 전통농업기술과 전통문화의 세대 전승, ③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개발과 지역 브랜딩·마케팅, ④ 전통지식과 농업유산 교육으로 제시
 - 이는 농업유산의 보전이 농업생산 활동의 유지에서 출발하되, 그 가치가 가공·브랜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관광·교육을 통한 교류로 확장되고, 그 성과가 다시 생산 활동과 공동체 유지의 기반으로 환류될 때 지속가능함을 의미
-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토지이용 관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농업유산의 가치가 '농업생산→가공·유통→체험·교류→정주·생활'의 단계를 거쳐 순환하는 것으로 설정
 - (농업생산) 전통농업 활동의 유지와 농지·기반시설의 보전 - 동적 보전의 '농업활동 유지 및 토지 보유'에 대응
 - (가공·유통) 농업유산 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브랜딩 - '지역 브랜딩·마케팅'에 대응
 - (체험·교류) 관광·교육을 통한 가치의 확산과 전통지식의 전승 - '농촌관광 개발' 및 '교육·전승'에 대응
 - (정주·생활) 관리 주체인 주민의 정주 기반 유지 - 농업유산의 관리가 주민의 계속 거

주와 공동체 유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가치순환의 토대이며, 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농업유산지구의 목적으로 ‘지역경제와 정주여건 증진’을 명시한 취지와 부합

- 마지막 단계인 정주생활이 다시 첫 단계인 농업생산의 주체(농업인)를 지탱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흐름은 단선적 사슬이 아닌 순환 구조를 형성
- 다만 기존 논의가 동적 보전의 실행 ‘활동’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각 단계가 수반하는 토지이용의 성격(보전적·준산업적·관광·정주)에 주목하여 가치순환을 농업유산지구의 공간 구성과 범위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 제도적 쟁점 종합

- 이상의 제도적 쟁점은 농업유산지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체계적 연계 방안, ②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경계 설정 원칙과 방법론, ③ 동적 보전의 관점에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실현하는 지구 내부 공간 구성 방향, ④ 용도지구 의제 활용 및 인접 지구 연계를 포함한 복합적 관리 수단의 구체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

제3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 특성과 공간관리 현황 분석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과 공간 특성
2. 보전·활용계획에 나타난 공간관리 현황과 문제점
3. 소결: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시사점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과 공간 특성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과 핵심지역 설정 방식

■ 2026년 3월 현재, 총 20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보전·관리 지원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3년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현재까지 총 20개 유산이 지정
- 지정 범위는 시·군 전역, 특정 읍·면, 마을 단위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지정 면적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남
 - 지정 범위를 시·군 전역으로 하는 것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특정 읍·면이 8곳, 마을 단위가 1곳(부안 유유동)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유산의 특성에 따라 시·군 또는 특정 읍·면 전역을 지정하더라도 재배면적, 제언·둠병 개수 등 핵심 요소 단위로 그 범위가 특정되기도 함
 - 면적 규모는 상주 전통곶감농업(시·군 전역, 125,478ha)이 가장 크고, 마을 단위의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시스템(마을, 58.9ha)로 가장 작음

[표 3-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26년 3월 현재)

지정번호 (년도)	명칭	지정 범위	지정 단위	주요 특징
* 제1호 (‘13)	청산도 구들장 논	완도 청산면 전역 (4,147ha)	특정 읍·면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 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
* 제2호 (‘13)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56,355ha)	시·군 전역	◦돌,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제3호 (‘14)	구례 산수유 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10,133ha)	특정 읍·면	◦생계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지정번호 (년도)	명칭	지정 범위	지정 단위	주요 특징
* 제4호 (‘14)	담양 대나무 밭농업	담양군 일원 (2,599ha)	시·군 전역 (대나무밭)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제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 제5호 (‘15)	금산 인삼농업	금산군 일원 (57,570ha)	시·군 전역	◦인삼재배의 최적지, 재배지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 제6호 (‘15)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원(597.8ha)	특정 읍·면 (차재배 면적)	◦생계유지를 위해 1,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 풀베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변의 산림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 제7호 (‘16)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 (14,188ha)	특정 읍·면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제8호 (‘17)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시스템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동 일대(58.9ha)	마을	◦병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 경적 봉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봉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제9호 (‘17)	울릉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	울릉군 일원 (7,286ha)	시·군 전역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피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제10호 (‘18)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의성군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사곡면 일원 (25,665ha)	특정 읍·면	◦금성면 일대 약 1,500개의 제언을 축조, 각각의 제언은 서로 이어져, 농업용수를 저장·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
제11호 (‘18)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보성군 일원 (222.8ha)	시·군 전역 (차밭 기준)	◦새끼줄을 기준삼아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제12호 (‘18)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장흥군 일원 (93.1ha)	시·군 전역 (차밭 기준)	◦반음반양의 차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업,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굽는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등 구축·전승
제13호 (‘19)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완주군 일원 (2,252ha)	시·군 전역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온돌 방식, 수직강하 방식 등이 있음
제14호 (‘19)	고성 해안지역 뽕병 관개 시스템	고성군 일원 (10,996ha)	시·군 전역 (14개 읍·면 중 12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뽕병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극복
제15호 (‘19)	상주 전통 꽃감농업	상주시 일원 (125,478ha)	시·군 전역	◦‘상주동시’ 전통 품종보전을 통한 감 재배 적지선정·관리·가공 등 꽃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제16호 (‘21)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강진군 병영면, 작천면, 강진읍 일원(5,508ha)	특정 읍·면	◦16개의 연방죽과 200여개의 뽕병, ‘병영성’과 수로 등 독특한 하멜식 물순환 수리체계 보전, 한들평야와 연방죽의 특별한 경관 형성
제17호 (‘22)	창원 독미 감 농업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일원(794ha)	특정 읍·면	◦100년 이상된 지역 고유의 짧은 감에 단감을 접붙인 형태로 감 농업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까지 보전·계승발전

지정번호 (년도)	명칭	지정 범위	지정 단위	주요 특징
제18호 (22)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서천군 전역 (18,260ha)	시·군 전역	◦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모시재배부터 모시짜기 전 과정이 현재까지 전승발전
제19호 (24)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청양군 일원 (47,911ha)	시·군 전역	◦ 농경지가 적은 물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투리 땅에 전통적인 삼목 기술로 구기자를 연 2회 수확해 청양주민의 생계 유지에 기여
제20호 (25)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정읍시 옹동면, 칠보면, 태인면 (12,379ha)	특정 읍·면	◦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정읍 지황은 주민의 핵심 소득원으로 벗짚을 활용한 종자 소독, 윤작 농법, 전통 구증구포 방식의 숙지황 제조 등 정읍만의 독창적이 농업 및 가공 기술이 오늘날까지 계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내부자료; 정읍시. (2025). 202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설명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일부(지정 단위) 추가

주. *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지원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 일부는 모니터링 시행
 - ('13~'20) 농촌다원적자원활용 → ('21)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 → ('24~'25)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 ('26)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지원
 -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보전)지원 사업은 지정 이후 3년간 진행되어 사업 이후에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농업유산을 보전해야 하는 한계 존재
 -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동활동 비용도 지원 가능²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지원 사업(2026)]

- ◇(목적)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경관, 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자원정비·복원 및 가치홍보·창출 등을 위한 발굴·보전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민협의체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개소당 3년간 1,425백만원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액 : 1년차 140백만원, 2년차 650백만원, 3년차 635백만원
 - '26년 예산 : 790백만원(국비 553, 지방비 237) ※ 지원예산 변동추이 : [2025] 140백만원, [2024] 890백만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e지. <https://www.nongupez.go.kr/nsm/bizAply/wholeBiz/wholeBizDtIs?afbzCd=AB000067&bizYr=2026>(검색일: 2026.3.17.)

28)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시행지침('25년)

■ 국가중요농업유산 내 핵심보전구역 등 세부 구역 설정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전·관리 지원을 위해 핵심보전구역(핵심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음
- 구역 설정 방식은 주로 핵심지역만 설정하거나 2단계[핵심/일반(주변)]로 나뉘며, 울진의 경우 3단계 구역으로 세분화 설정
- 핵심보전구역(핵심지역 등)을 그 외의 지역과 구분하는 것은 주로 지원사업 대상지를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효력을 갖거나 세부 구역별 행위 규제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차원은 아닌 것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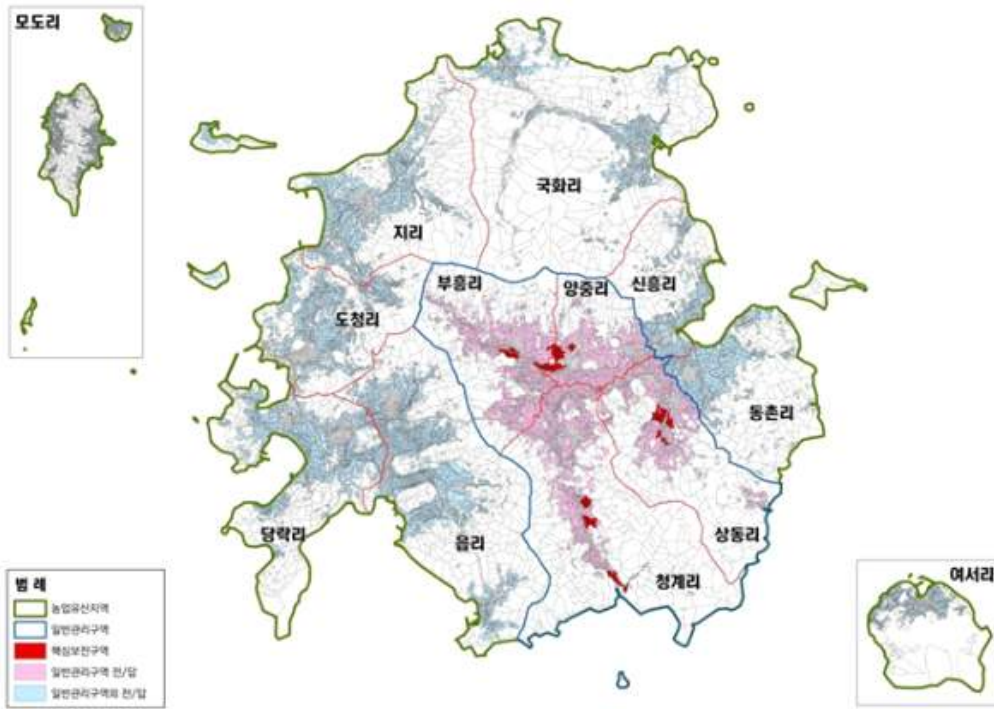
[표 3-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 보전·관리계획에 따른 세부구역 설정

지정번호 (년도)	명칭	구역 구분	구역 구성	핵심보전구역 세부내용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O	◦ 핵심보전구역: 195개 필지, 13ha ◦ 일반관리구역: 4개 법정리	핵심보전구역은 일반관리구역의 일부
제2호	제주 발담	O	◦ 핵심구역: 158.8km ² ◦ 완충구역: 561km ² ◦ 특별관리구역: 미지정	핵심구역 내 시범사업 우선 시행, 이후 특별관리구역 내 우수관리지구 지정 및 확대(계획)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X	단일 지정	산동면 33개 마을 대상 산수유 전통농업구역 공모방식 제안(계획)
제4호	담양 대나무 밭농업	O	◦ 핵심지역(핵심마을): 3곳 - 월산면 월산리, 담양읍 삼다리, 금성면 대곡리	GIAHS 현장실사가 진행된 3개 핵심마을 대상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호	금산 인삼농업	X	(농업시스템 면적 1,552ha, 전통재배 388ha로 구분하여 파악)	-
제6호	하동 전통 차농업	X	단일 지정	-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O	◦ 핵심보전구역: 자체 평가 우수지역 ◦ 완충구역: 그 외 지역 ◦ 특별관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핵심보전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일부 중첩
제8호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시스템	X	단일 지정	-
제9호	울릉 화산섬 밭농업시스템	N/A	N/A	N/A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O	◦ 핵심지역: 7,453ha, 4개 면 일부 ◦ 주변지역: 18,212ha, 4개 면 ※ 의성 마늘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 지정 (23,100ha, 2016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은 4개 면이며, 핵심지역은 이 중 금성산 일대(4개 면 일부)로 설정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X	단일 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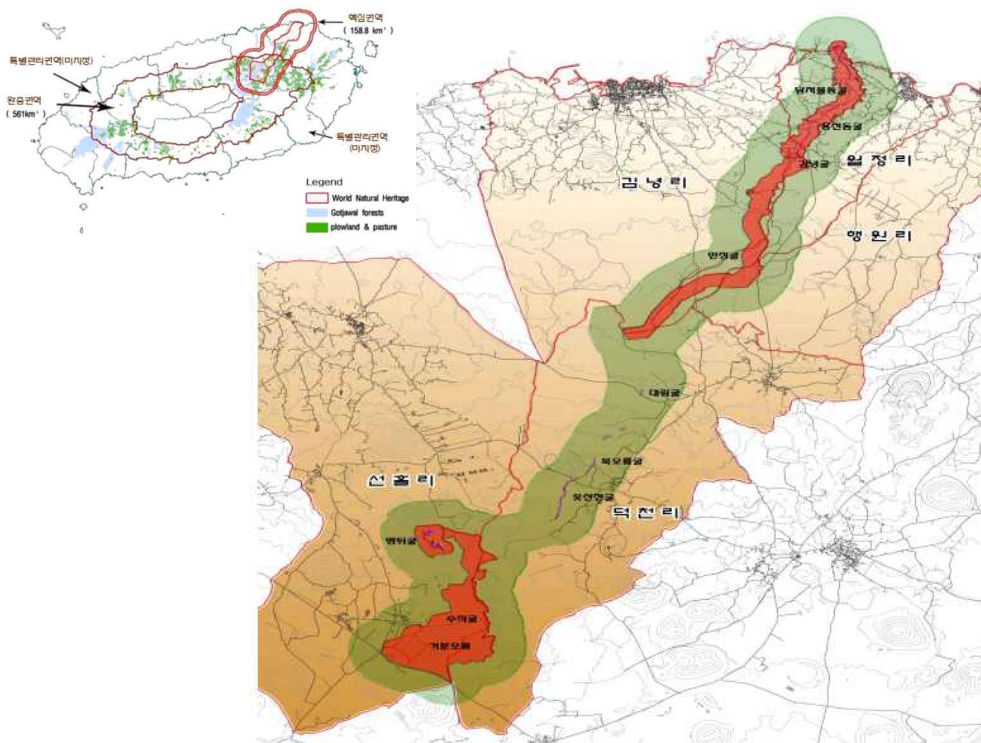
지정번호 (년도)	명칭	구역 구분	구역 구성	핵심보전구역 세부내용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O (계획)	◦ 핵심지역: 야생차밭(112곳) 중 지정 ◦ 일반지역	-
제13호	완주 생강 전 통농업시스템	X	단일 지정	-
제14호	고성 해안지역 둔병 관개시스템	X	단일 지정	-
제15호	상주 전통곶감 농업	O (계획)	◦ 핵심구역: 농업유산의 가치와 형태가 가 장 잘 보전되어 있는 곳 ◦ 완충구역: 농업유산의 가치와 형태의 보 전이 필요한 지역 ◦ 협력구역: 농업유산 관련 생태, 연구, 교 육, 관광 등에 적합한 활동을 위한 지역	핵심지역(5개동·5개면)을 대상으로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세 부 구역(핵심/완충/협력) 설정은 향후 계획에 포함
제16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O	◦ 핵심지역: 1,136ha(몽리면적)	5개 연방죽과 방죽의 수혜를 받는 한 들평야 경작지(몽리지역) 포함
제17호	창원 독외 감 농업	O	◦ 핵심지역: 33ha ◦ 완충지역: 204ha ◦ 일반지역: 557ha	-
제18호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O	◦ 핵심지역: 5개면, 15,097ha ◦ 주변지역: 8개면, 21,507ha	-
제19호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O	◦ 핵심지역: 1읍·3면, 19,560ha - 핵심보전구역: 운곡면 3개 리, 1,856ha ◦ 주변지역: 6개 면, 28,350ha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시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고, 핵심지역 내 핵 심보전구역 설정
제20호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O	◦ 핵심구역: 1읍, 3,994ha ◦ 주변구역: 2읍, 8,385ha ※ 정읍 지황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2022년)	-

출처: 원도군. (2023).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구례군. (2024). 산동 산수유농업시스템; 담양군. (2021).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보전·관리 종합계획; 금산군. (2018). 금산 인삼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하동군. (2017). 하동 전통 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울진군. (2022). 울진금강송 산지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핵심보전구역 지정관리 종합계획; 부안군. (2016).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의성군. (2018). 의성 최소우지역 전통제면 농업시스
템; 보성군. (2019).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성 차농업시스템 보전관리 종합계획; 장흥군. (2020).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보전관리 기본계획; 완주군. (202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중장기 보전·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계획; 고성군. (2017). 고성 해안지역 둔병 관개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상주시.
(2021). 상주 전통 곶감농업 아카이브 구축 및 보전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강진군. (202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
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템 자원조사 및 다원적 활용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창원시. (2019). 창원 단
감농업 농업자원 설명서. 서천군. (2022).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자원 설명서; 청양군. (2025). 청양구기자 전통농
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학술 용역; 정읍시. (2025). 202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설명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참고
하여 작성

주. 각각의 국가중요농업유산마다 추진단계와 취득가능한 자료가 달라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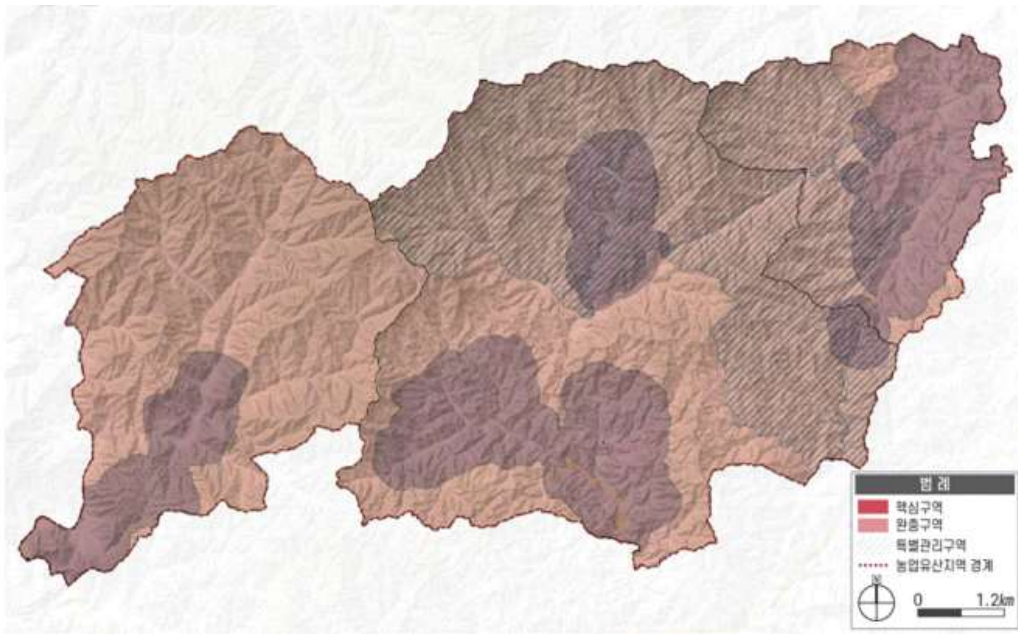
[그림 3-1] 청산도 구들장논 농업유산지역-일반관리구역-핵심보전구역 현황
출처: 완도군(2023,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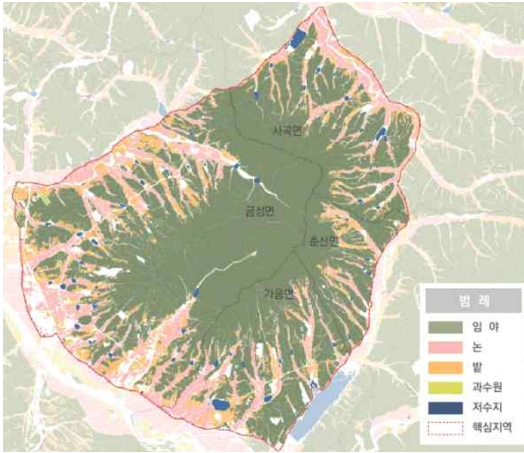
[그림 3-2] 제주밭담 보전 핵심권역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4, p.223 그림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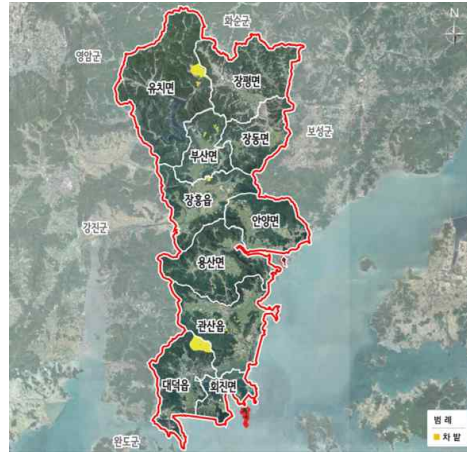
[그림 3-3] 담양군 대나무밭 분포현황 및 핵심마을 3곳
출처: 담양군(2021, pp.8~11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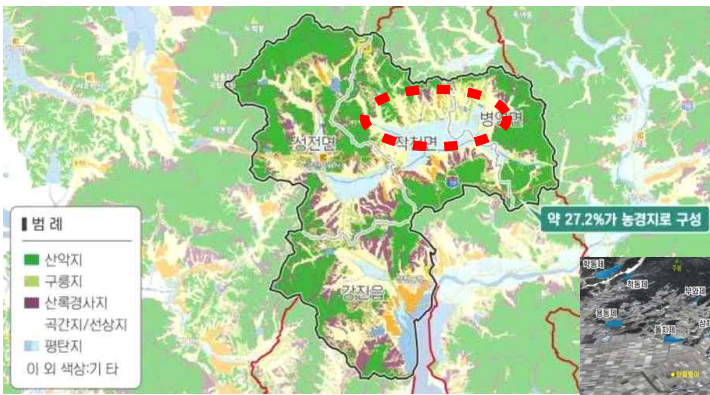
[그림 3-4] 울진 금강송 핵심보전구역-완충구역-특별관리구역 현황
출처: 울진군(2022,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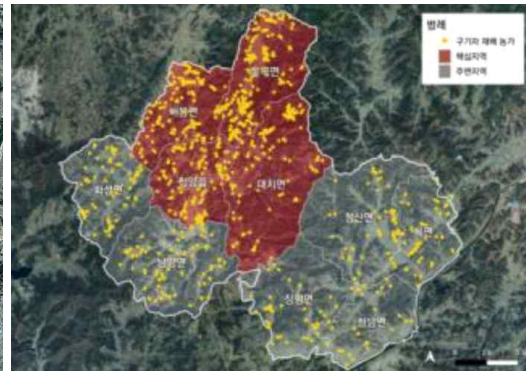
[그림 3-5]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핵심지역
출처: 의성군(2018, p.11)



[그림 3-6] 장흥 지정 지역 및 핵심지역(차밭)
출처: 장흥군(2020, p.4)



[그림 3-7]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지정 지역 및 핵심지역(병영면·작천면 일대)
출처: 강진군(2022, p.7, p.22)



[그림 3-8] 특정 읍·면 단위 핵심지역 및 주변지역 구분 사례(서천군, 청양군)
출처: 서천군(2022, p.1); 청양군(2025, p.148)

■ 핵심지역(핵심보전구역) 설정 기준

- 핵심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은 농업유산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행정리 단위 주산지, 농업자원의 물리적 속성, GIS 기반 정량·정성 분석, 외부 기준 준용 등 네 가지로 구분됨 [표 3-3 참고]
- 농업자원의 속성과 행정리 단위 주산지가 가장 많이 활용되며, 행정리 단위보다는 농업자원의 속성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정밀도가 높음
 -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의 경우 기계식이 아닌 전통 채다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점적으로 분포하는 500m² 이상 야생차밭을 핵심관리구역으로 설정²⁹⁾
 - 반면 대부분의 행정리 단위 설정은 ‘해당 읍·면에 자원이 많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핵심지역 내부의 밀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표 3-3] 국가중요농업유산 핵심지역 설정 방식

설정 방식	내용 및 특징	해당 농업유산
행정리 단위 주산지	농업유산 자원의 주산지가 위치한 행정리 또는 읍·면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식 지역 설정이 용이하고 행정적 관리가 편리하나, 행정경계와 자원 분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 서천 한산모시 농업,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농업자원의 물리적 속성	농업유산 자원의 밀집도, 전통성, 면적, 보전 상태 등 물리적 속성을 기준으로 핵심지역을 설정하는 방식 농업유산의 가치와 형태가 잘 보전되고 전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대표적인 구역을 설정하나 구체적 인 경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계획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수	청산도 구들장 논, 담양 대나무밭,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상주 전통곶감농업, 창원 독미 감농업
GIS 기반 정량·정성 분석	경사도, 표고, 임상도, 접근성 등 객관적 지표를 GIS로 분석하고, 전문가 현장조사와 주민 참여도와 같은 정성 지표를 병행하여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GIS 데이터 구축에 비용과 전문성 요구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외부 기준 준용	제주 발담은 세계자연유산 핵심지구를 기준으로 사방 5km를 핵심권역으로 설정한 사례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경우 특별관리구역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핵심보전구역과 일부 중첩 이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이 높으나, 농업유산 고유의 가치가 아닌 외부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	제주 발담,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출처: 완도군(2023); 제주특별자치도(2014); 담양군(2021); 울진군(2022); 의성군(2018); 장흥군(2020); 완주군(2022); 상주시(2021); 강진군(2022); 창원시(2019); 서천군(2022); 청양군(2025); 정읍시(2025) 참고하여 작성
주. 아직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청양, 정읍 등) 핵심지역이 구체화되지 않아 지자체별 수준 비교는 어려움

29) 장흥군(2020, pp.63~65)

-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경우 유일하게 GIS 기반 정량·정성 분석을 활용하여 핵심지역 설정의 객관성 확보하고자 함. 그 외에는 행정적인 관리의 용이성이나 정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핵심지역을 설정하는 데 체계적 접근이 필요

[표 3-4]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핵심보전구역 설정기준(GIS 기반)

구분	기준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토지이용	◦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되고 발달해온 농·임업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생물다양성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
울진금강송 산지농업과 관련한 문화 및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고유성 및 경관	◦ 농업유산의 고유한 특성의 보전상태가 양호하면 경관이 우수한 지역
	보전 및 활용 가능성	◦ 마을주민의 관리 및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보전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출처: 울진군(2022, pp.85~86) 재구성

- 핵심지역 설정 방식은 농업유산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유성 및 전통성,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 다양성,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과 같은 공통적인 속성 공유

- (1) 고유성 및 전통성: 농업유산 고유의 전통농업 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 (2)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핵심지역은 농업유산 자원 간 유기적 관계가 작동하는 구역이거나 자원 간 관계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밀집도가 높은 지역
- (3)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 다양성: 농업유산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고유한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이 높은 구역
- (4)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 주민이 실제로 농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보전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보전협의회 등을 통한 관리가 가능한 지역

[표 3-5] 국가중요농업유산 핵심지역의 공통 속성과 사례

공통 속성	사례(예시)
고유성 및 전통성	장흥: 야생차 전통 채다(채취) 여부 상주: "전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대표구역"을 핵심구역 정의 울진: 산지 농업시스템 서천: 전통 직조 유지 마을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유기적 관계망] 청산도: 구들장 통수 구조 의성: 제언 → 수로 → 경작지 수리 관계망 강진: 연방죽 → 수로 → 경작지 수리 관계망 [자원 밀집도] 창원: 독외 감나무 밀집지 담양: 대나무 군락 밀집지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다양성	울진: 금강송 산림 생태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고성: 둠벙 주변 습지 생태계 보성: 차밭의 생물다양성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	구례: 전통농업구역 공모(계획) 정읍: 관리 주체로서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용호·용이·저상마을) 강진: 5개 연방죽 수해(몽리)지역

출처: 원도군(2023); 제주특별자치도(2014); 구례군(2024); 담양군(2021); 울진군(2022); 의성군(2018); 장흥군(2020); 완주군(2022); 상주시(2021); 강진군(2022); 창원시(2019); 서천군(2022); 청양군(2025); 정읍시(2025) 참고 작성

[제주 발담 보전지역 지정기준(2014)]

- ① 제주발담 농업시스템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고유성 및 전통성)
- ② 주변에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특히 곳자왈지역과의 관련성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다양성))
- ③ 현행법에 의해 경관이 관리되고 있거나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자원 밀집도)
- ④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구, 생물권보전지구, 세계지질공원 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생태적 보전 가치)
- ⑤ 보전과 아울러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활용 가능성)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4. p.221)

2) 공간 요소의 연결 방식에 따른 공간 유형 분류

■ 농업유산별 핵심 공간 요소와 연결 방식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유산의 존재를 규정하는 물리적 자원으로서 고유한 핵심 공간 요소를 가지며, 이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는 방식(농업시스템)³⁰⁾이 공간 특성을 결정
- 20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 요소 간 연결 방식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의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물의 흐름이 공간 요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리시설(구들장 수로, 제언, 둠벙, 연방죽)이 경작지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며, 수리시설 네트워크가 곧 공간 체계를 결정
- 둘째, 산림과 농업 영역이 생태적으로 공생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농업자원이 산림과 공생하거나 산림-농지 경계면에서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며, 표고차에 따른 수직적으로 공간 분화가 나타남
- 셋째, 특정 수종 군락의 밀도와 분포 범위가 공간 경계를 형성하는 패턴으로 이들은 군락 자체가 유산의 실체이며, 군락이 분포하는 범위가 곧 유산의 공간 범위가 됨
- 넷째, 생산지와 저장·가공지의 기능적 연결이 공간 특성을 결정하는 농업유산으로 이들은 재배지-가공(저장)시설-주거지가 물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가구 단위에서 일체화되어 있으며 생산-가공(저장)의 기능적 연결이 끊어지면 시스템 자체가 해체됨
- 다섯째, 농업자원이 광역에 분산되어 있어 요소 간 물리적 연결이 뚜렷하지 않은 농업유산으로 이들은 넓은 면적에 재배지가 산재하여 핵심 거점을 선별해야 하는 방식

[표 3-6]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핵심 공간 요소와 연결 방식

지정번호	명칭	핵심 공간 요소	공간 요소 간 연결 방식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구들장 지하수로, 계단식 논, 경사지 통수 체계	구들장 암거배수소가 논과 논을 수직적으로 연결 → 물의 흐름(상위 논 → 하위 논)이 시스템 작동 원리
제2호	제주 밭담	밭담(경작지 경계·방풍), 중산간 밭농업지대	밭담이 도 전역에 모자이크 형태로 분산 → 개별 밭담 사이에 물리적 연결 없이 광역 산재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산수유 군락, 노거수, 33개 마을	산수유 군락의 밀도와 분포 범위가 마을을 에워쌌 → '마을=재배지' 구조, 군락 분포가 공간 경계 결정
제4호	담양 대나무 밭농업	대나무 군락, 마을	대나무 군락 밀도가 높은 지역이 핵심구역 → 군락의 밀도·분포 범위가 구역 경계 근거
제5호	금산 인삼농업	전통인삼 재배지, 금산인삼시장, 건조· 가공시설	군 전역(575.7km ²)에 재배지가 분산 → 재배지 사이에 연결 없이 광역 산재, 시장이 유통 거점

30) 농업시스템의 공간 특성은 해당 농업유산이 유지되기 위해 어떤 공간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의미

지정번호	명칭	핵심 공간 요소	공간 요소 간 연결 방식
제6호	하동 전통 차농업	야생·전통 차밭, 지리산 산지 생태계, 화개장터	지리산 산지→계곡 차밭→마을→화개장터 수직 배치 → 산림이 차밭에 수분·미기후·유기물 제공(생태적 공생)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금강소나무 군락지, 송이산, 산지 화전 농경지, 계곡부 정주지	금강송(고지대)→경사면 송이 생산지(중간)→정주지(저지대) → 산림-농지 경계면의 물질 순환이 핵심
제8호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시스템	들봉나무밭, 양잠 시설, 유유마을 정주 공간	마을 내에서 봉밭→양잠시설→주거지가 일체 → 생산-가공이 단일 마을 내 기능적으로 연결
제9호	울릉 화산섬 발농업시스템	산림, 농지(경사지)	산림→경사면 농경(중간)→정주지(저지대)→해안 → 산림-농지(소 활용 농업·퇴비 생산)-해안(바다안개 수분 활용) 물질 순환이 핵심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제언1,500여 개(금성면600개), 제언-수로 관개망, 구릉지형	제언에서 수로를 거쳐 경작지로 이어지는 관개 체계 → 물의 흐름(제언→수로→경작지)이 시스템 연결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계단식 차밭, 핵심 다원(회천면 등), 산림·하천	산지 경사면에 차밭이 산림과 연속 배치 → 산림-차밭 경계면의 생태적 상호작용이 핵심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야생차밭(112개소), 보림사 일원 전통 채취지, 가내 발효 공간	산림 내 야생차밭이 점적으로 분산 → 산림이 차밭의 생육 환경 제공(산림-농업 공생)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생강 주산지, 생강굴(저장)	행정리 단위 주산지→저장·가공→유통의 공간적 흐름 → 생산지-저장시설의 기능적 연결이 핵심
제14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둠벙(약 300여 개), 둠벙 연계 수로·경작지, 생물다양성 서식처	둠벙→수로→경작지의 소규모 관개 단위가 반복 → 물의 흐름이 각 단위를 연결(12개 읍면 분산)
제15호	상주 전통곶감 농업	감나무밭(핵심5동+5면), 곶감 건조장	감나무밭-건조장-주거지가 하나의 통합경관 → 생산-가공의 물리적 인접이 유산 경관의 본질
제16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5개 연방죽, 도수로·배수로 체계, 한들 평야 경작지	연방죽→취수구→도수로→경작지→배수로 체계 → 5개 수리권역의 물의 흐름이 공간 골격
제17호	창원 독미 감 농업	독미 지형(독립 구릉) 및 감나무 군락, 주변 농경지·마을	독미(구릉) 위 감나무 군락이 경관 단위 형성 → 지형+군락의 분포 경계가 공간을 구획
제18호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모시 재배지(모시밭), 가내 직조 공간	가구 단위에서 재배-태질-직조가 일체화, 5개 면 분산 → 생산-가공의 가구 단위 기능적 통합이 핵심
제19호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구기자 재배지, 구릉지-곡간지 경계 지형	산악지-곡간지 경계 구릉지에 재배지 산재 → 재배지 사이에 연결 없이 점적 분산
제20호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지황 재배지, 산지·하천·구릉 생태 연결, 전통 가공 공간	산지-평야-하천-분지 자연지형 속 재배지 분포 → 재배지가 자연지형 골격에 따라 분산 배치

출처: 완도군(2023); 제주특별자치도(2014); 구례군(2024); 담양군(2021); 금산군(2018); 하동군(2017); 울진군(2022); 부안군(2016); 의성군(2018); 보성군(2019); 장흥군(2020); 완주군(2022); 고성군(2017); 상주시(2021); 강진군(2022); 창원시(2019); 서천군(2022); 청양군(2025); 정읍시(2025); 국립농업과학원(2018) 참고하여 작성

■ 공간 특성에 따른 5개 유형과 공간관리의 초점

- FAO(2011)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농업시스템 유형을 분류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어업유산을 포함하고, 지형, 농법, 작물, 사회집단 등 여러 기준이 혼재된 기술적 분류로서 공간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3-7] FAO GIAHS 농업시스템 유형 분류

구분	내용 및 예시
산지 계단식 논 농업생태계 (Mountain rice terrace agroecosystems)	통합 삼림 이용 및/또는 복합 임농시스템과 결합된 산지 계단식 논 시스템 예) 필리핀 이푸가오 계단식 논, 벼-어류 복합재배, 벼-어류-오리 시스템
복합작부/다작 농업시스템 (Multiple cropping/polyculture farming systems)	다양한 작물 품종의 혼작 또는 임농복합과 결합된 시스템. 미기후 조절, 토양·수자원 관리, 기후변동 적응이 특징 예) 멕시코 치남파스, 페루·볼리비아 와루와루 시스템
임간재배 시스템 (Understory farming systems)	상층 캐노피와 하층 환경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 임업·과수원·작물 시스템 예)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의 타로 기반 시스템
유목 및 반유목 목축시스템 (Nomadic and semi-nomadic pastoral systems)	이동성과 가축 구성 변화를 통한 목초지·방목지·수자원·염분·산림 자원의 적응적 이용 예) 마사이족, 야크 목축, 순록 관리
고대 관개·토양·수자원 관리시스템 (Ancient irrigation, soil and water management systems)	건조지대의 정교한 관개·토양·수자원 관리 시스템 예) 이란 카나트, 마그레브 오아시스, 스리랑카·인도 마을 저수지 시스템
복합 다층 가정정원 (Complex multi-layered home gardens)	야생 및 재배 수목, 관목, 식물을 활용한 다층 가정정원. 식품, 의약품, 장식용, 기타 자재 생산 예) 중국·인도·카리브해·아마존 가정정원 시스템
해수면 이하 시스템 (Below sea level systems)	삼각주 습지 배수를 통한 경작지 조성. 다기능적 토지 이용(농업, 휴양, 관광, 자연 보전, 도시화) 예) 네덜란드 폴더, 인도 케랄라 쿠타나드 습지, 방글라데시 부유정원
부족 농업유산시스템 (Tribal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경사지에서 토양·수자원·작물 품종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족 농업 관행과 기술 예) 인도 아파타니 벼-어류 문화, 자보 시스템, 다르질링 시스템
고부가가치 작물 및 향신료 시스템 (High-value crop and spice systems)	고부가가치 작물·향신료 관리 관행. 특정 작물 전용 또는 윤작·수확 기술 예) 이란·아프가니스탄·인도 카슈미르 사프란 시스템
수렵채집 시스템 (Hunting-gathering systems)	야생 벼 수확, 꿀 채집 등 독특한 농업 관행 예) 차드 야생벼 수확, 중앙·동아프리카 산림 거주민 꿀 채집

출처: FAO. (2011).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 Legacy for the Future 내용 정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 요소 간 연결 방식’을 기준으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개략적인 지구 설정 및 공간관리 방향을 제시

① 수계 연동형

- 수계 연동형은 수리시설(보, 제언, 둠벙, 수로)과 물의 흐름이 농업시스템의 작동 원리이자 공간 골격이 되는 유형
- 이 유형에 속하는 농업유산은 '수리시설 → 수로 → 경작지'의 연결 구조를 공유하지만, 수리시설의 형태와 규모에 차이가 있음
 - [청산도] 지하 암거배수로(구들장)에 의한 수직적 순환, [의성] 1,500여 개 제언의 방사형 분산 수계, [고성] 300여 개 둠벙의 소규모 단위 반복, [강진] 대규모 방죽과 도수로에 의한 수평적 네트워크
- 수계 연동형은 농업유산지구를 설정할 때 수계·유역 단위를 바탕으로 수리시설에 의해 물을 받는(몽리) 지역을 구역 범위 설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리시설 간 네트워크의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



[그림 3-9] 수계 연동형(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청산도, 의성, 고성, 강진)

출처: 완도군; 의성군; 고성군; 강진군; 국립농업과학원(2022, p.15, p.69, p.93, p.105)에서 재인용

② 산림 공생형

- 산림 공생형은 산림과 농업 영역의 경계면에서 형성된 물질 순환과 생태적 공생관계가 유산의 핵심 가치인 유형. 산림이 농업 토양에 유기물·수분·미기후를 제공하고, 농업 활동이 산림의 관리와 보전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나타남
- 이 유형에 속하는 5개 유산은 공간구조에서 대부분 수직 층위 구조를 보임
 - [하동] 지리산 산지 → 계곡 차밭 → 마을의 수직 흐름, [울진] 금강송 군락지(고지대) → 송이산(중간 경사면) → 계곡부 정주지(저지대)의 전형적 수직 층위, [보성] 산지 경사면 계단식 차밭이 면적·수직 구조, [장흥] 산림 속 야생차밭이 점적으로 분산된 수직 구조
- 산림 공생형은 지구 경계 설정 시 산림-농지 경계면을 고려하여 산림과 농지를 함께 포함되게 하고, 공간관리의 초점을 산림-농업 공생 관계를 보전하는 데 둘 필요



[그림 3-10] 산림 공생형(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동, 울진, 보성, 장흥)

출처: 하동군; 울진군; 보성군; 장흥군; 국립농업과학원(2022, p.45, p.51, p.75, pp.81~82)에서 재인용

③ 수목 군락형

- 수목 군락형은 특정 수종의 군락이 유산의 실체이며, 군락의 밀도와 분포 형태가 유산의 공간적 경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됨
- 이 유형에 속하는 농업유산은 모두 면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담양의 대나무 군락이나 구례의 산수유 군락과 같이 마을과 일체화된 경우와 창원의 독피(구릉지) 감나무 군락과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음
- 수목 군락형의 지구 설정은 수목 군락의 분포 경계를 바탕으로 하되, 전체적인 농업시스템 관점에서 수목 군락과 마을, 농지 등과의 관계 및 배치 형태를 고려하여 구역 설정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 유형은 군락이 축소·소멸하면 곧 농업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군락의 밀도·범위를 유지하는 한편 마을과의 관계 유지가 공간관리의 초점이 되어야 함
 - 구례의 산수유나무 반출금지 조례가 참고할 만한 제도적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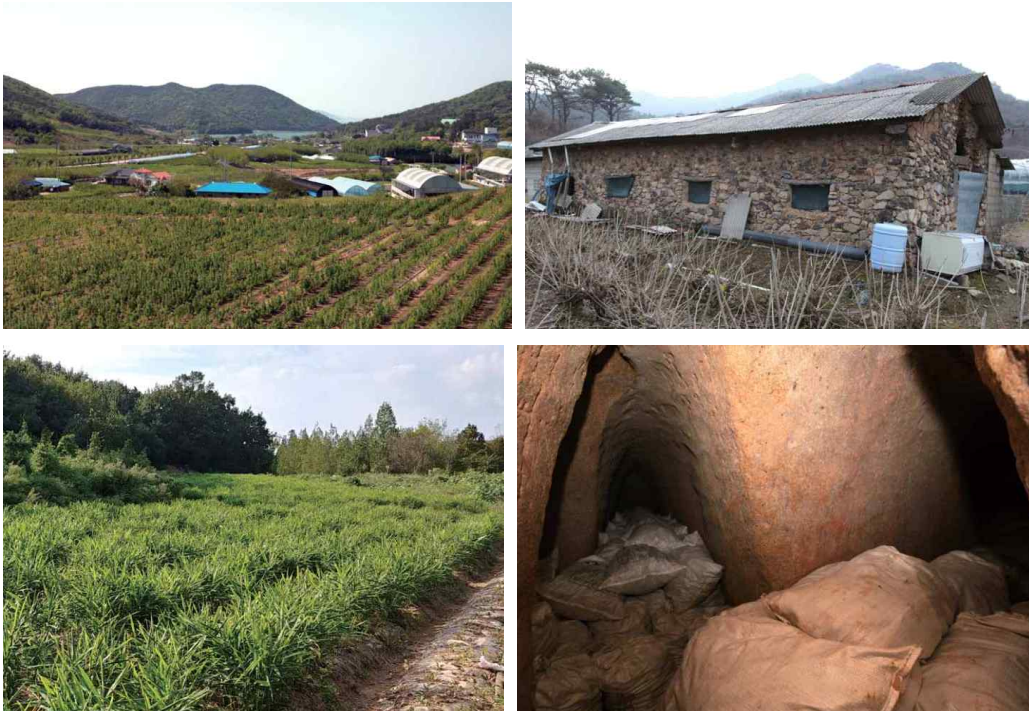


[그림 3-11] 수목 군락형(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구례, 창원, 담양)

출처: 구례군; 창원시; 국립농업과학원(2022. p.27. p.111)에서 재인용; 담양군(2021. p.1. p.11)

④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 생산-저장·가공 연계형은 생산지와 저장·가공지의 물리적 인접 또는 가구 단위 일체화가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을 결정하는 유형
- 이 유형에 속하는 농업유산은 생산-저장·가공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해당 농업유산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 관계는 차이가 나타남
 - [부안] 마을 단위 뽕밭-양잠의 소규모 일체형, [완주] 재배지(주산시)-저장시설(생강굴 주택)-유통 흐름, [상주] 감나무밭-건조장-주거지 연결·통합, [한산모시]는 가구 단위에서 재배-가공-직조가 일체화되나 점적으로 분산³¹⁾
- 생산-저장·가공 연계형의 지구 경계 설정은 생산-저장·가공의 기능적 연계 권역을 기본 단위로 하며, 생산지에서 저장·가공지까지의 물리적 거리와 기능적 연결을 고려하여 구역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간관리의 초점은 생산-저장·가공의 기능적 연결이 끊어지면 농업유산 시스템 자체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생산-저장·가공 연결 기능의 유지에 있으며, 재배지 축소와 저장·가공 기능의 외부 이전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그림 3-12]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위)부안 양잠농업, (아래)완주 생강전통농업시스템]

출처: 국립농업과학원(2022, p.45, p.51, p.88, p.90)

31)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은 야생차를 가공하여 발표차를 만드는 것이 농업유산의 핵심이기는 하나 대체로 차나무 자생 지역과 청태전 가공 공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삼림공생형으로 구분하였음

⑤ 적지 분산형

- 적지 분산형은 유산자원이 광역에 분산되어 있어 명확한 공간적 핵심이 뚜렷하지 않은 유형으로 모두 재배지가 넓은 면적에 산재하여 핵심 거점 선별이 필요한 구조
- 적지 분산형의 지구 설정은 핵심 거점의 선별을 기본으로 하며, 분산된 자원 중 밀도·전통성·보전 상태 등이 우수한 지점을 선별하여 우선적인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제주 발담은 광역 지정-점적 관리(밀집도나 주민 참여도 반영) 사례이며, 금산 인삼 농업은 아직 핵심 거점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과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아직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읍·면 단위로 핵심지역 설정
- 공간관리의 초점은 거점 중심의 차등 관리에 있으며, 핵심 거점의 집중 관리와 나머지 지역의 완화된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



[그림 3-13] 적지 분산형 [(좌)제주 발담, (우)금산 인삼농업]
출처: 국립농업과학원(2022, p.23, p.39)



[그림 3-14] 적지 분산형 - 청양 구기자 농업
출처: 청양군(2025, p.70)

■ 국가중요농업유산 공간 특성과 공간관리의 초점 종합

- 농업유산의 공간 특성은 핵심 공간 요소가 무엇인가 보다 그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공간관리는 자원 자체가 아닌 자원 간 연결 방식에 기반할 필요
- 5개 유형에 따라 개략적인 지구 경계 설정 단위와 공간관리 초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수계 연동형은 유역 단위 경계 설정 및 수리시설 연결성 유지, 산림 공생형은 경계면 기반 구역화, 수목 군락형은 군락 분포 및 마을과의 관계 유지, 생산-저장·가공 연계형은 기능적 연계권 설정 및 연결 기능 보전, 적지 분산형은 핵심 거점 선별+차등 관리가 각각 적합
- 일부 농업유산은 복합적 연결 방식을 보이므로 주된 유형의 관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부차적 유형의 관리수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 필요
 - 예컨대 의성 전통제언은 수계 연동이 기본이나 1,500여 개 제언이 광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천 한산모시도 생산-가공 일체화가 핵심이나 5개 면에 분산된 특징
 - 담양 대나무밭 농업은 산림-농업-정주의 공생 구조로 산림공생형의 특성에도 부합
 - 장흥 발효차 청태전의 경우 산림 공생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차를 채집한 이후 청태전으로 가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저장·가공 연계형에 포함될 수 있음

[표 3-8] 농업유산 유형 분류와 유형별 공간관리의 초점

유형	공간 요소의 연결방식	해당 유산	지구 경계 설정 단위	공간관리 초점
수계 연동형 (수리체계형)	물의 흐름이 시스템 연결	청산도 구들장 논(제1호) 의성 전통수리농업(제10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제14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제16호)	수계/ 유역	수리시설 연결성 유지·복원
산림 공생형	산림-농업 물질 순환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제7호)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제11호) 장흥 발효차 농업시스템(제12호) 울릉 화산섬 발농업시스템(제9호)	산림-농지 경계면	산림-농업 공생 관계 보전
수목 군락형	수목 군락 분포가 농업유산의 실체	담양 대나무 밭농업(제4호) 창원 독미 감 농업(제17호) 구례 산수유 농업(제3호)	수목 군락 분포 및 마을과의 관계	군락 밀도·범위 유지 및 마을 연계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생산지-저장·가공 시설 기능적 연결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시스템(제8호)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제18호) 완주 생강 전통 농업시스템(제13호) 상주 전통곶감농업(제15호)	생산-가공 기능 연계권역	생산-가공 연결 기능 유지
적지 분산형	농업유산 요소 광역적 분산	제주 발담(제2호) 금산 인삼농업(제5호)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제19호) 정읍 지황(제20호)	핵심 거점 선별	거점 중심 차등 관리

출처: 연구진 작성

2. 보전·활용계획에 나타난 공간관리 현황과 문제점

1) 분석 개요

- 농업유산지구 설정 및 공간관리 방향 도출을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보전 및 활용계획은 5개 유형별 2개씩, 총 10개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 3-9] 보전 및 활용계획 분석 대상

연번	유형	농업유산명	지정번호	보전활용계획명(계획수립년도)
1	수계연동형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1호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시행계획(2023)
2	수계연동형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제16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템 자원 조사 및 다원적 활용사업 기본계획(2022)
3	산림공생형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제7호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핵심보전구역 지정관리 종합계획(2022)
4	산림공생형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보전관리 기본계획(2020)
5	수목군락형	구례 산수유 농업	제3호	산동 산수유농업 시스템(2024) (산수유농업 액션플랜)
6	수목군락형	담양 대나무 발농업	제4호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발 보전·관리 종합계획(2021)
7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중장기 보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계획(2022)
8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상주 전통곶감농업	제15호	상주 전통 곶감농업 아카이브 구축 및 보전관리 종합계획(2021)
9	적지분산형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제2호	제주발담 보전관리 종합계획(2014)
10	적지분산형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제19호	청양구기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사업시행 계획(2025)

출처: 완도군(2023); 제주특별자치도(2014); 구례군(2024); 담양군(2021); 울진군(2022); 장흥군(2020); 완주군(2022); 상주시(2021); 강진군(2022); 청양군(2025)

- 2장에서 검토한 농업유산의 가치순환의 단계(농업생산 - 가공·유통 - 체험·교류 - 정주·생활)를 분석 틀로 적용하여 각 계획의 내용을 분류하고, 각 단계의 사업이 수반하는 토지이용의 성격과 필요한 조건을 검토³²⁾

2) 가치순환 단계별 계획 내용과 토지이용 영향

① 농업생산 부문

- 10개 계획 모두에서 농업생산 단계에 가장 많은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유산 보전의 일차적 목표인 '전통농업의 유지'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 구체적 사업 유형은 농업유산 자원의 물리적 복원(청산도 구들장논 복원·정비, 제주 밭담 복원 등), 전통농업의 전승(장흥 전통채취·발효, 울진 화전농업 복원), 생산기반 유지(강진 수리시설 관리, 완주 종강 보급), 그리고 농업유산 자원의 모니터링(구례 노거수 보호 249주, 담양 대나무밭 관리)으로 구분
- (토지이용 영향) 농업생산 단계의 사업은 기존 농지·임야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전통적 생산방식을 보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이는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방지하고, 전통 영농방식의 지속을 의무화하는 보전적 토지이용 관리 수단을 수반함
 - 울진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자원보호구역(특별관리구역)이 중첩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농업유산 제도가 아닌 산림보호 제도에 의한 것
 - 구례는 산수유나무 반출금지 조례와 노거수 보호를 통해 '나무 단위'의 보호를 하고 있으나 '토지 단위'의 전용 방지에는 이르지 못함
 - 제주밭담은 토지비축제를 통해 밭담 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나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그 외 대부분의 농업유산 지역에서는 보전·활용 계획에 전통농업의 복원 사업을 명시해 놓고 있으나 인접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는 실정

② 가공·유통 부문

- 가공·유통 단계는 10개 계획 중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나며, 상주 곱감전통농업의 경우 상주곶감유통센터를 허브로, 마을별 건조시설을 분산 거점으로 구축하여 가장 체계적인 가공·유통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저장·가공·유통 관련 시설 계획이 없거나(강진, 청양), 기존 시설에 의존하는 사례(청

32) 계획 단계의 사업내용으로 실제 추진 여부는 미확인

산도, 장흥)가 있으며, 가공시설의 신규 설치를 계획하는 사례(울진, 완주)도 구체적 입지와 규모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 구례 산수유는 산업특구(665,925㎡, 42개 기업)가 가공·유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유산 보전활용계획이 아닌 별도의 산업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 (토지이용 영향) 가공·유통 사업은 농촌 지역 내에서 소규모 준산업적 토지이용을 수반. 가공시설(건조장, 세척·분말 시설, 저장 창고 등)은 농지나 자연환경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 규정과 충돌할 수 있음
 - 특히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가공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거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구례의 산업특구는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를 우회하는 법적 장치로서, 산업특구 내에서는 공장 설립 등이 완화된 절차로 가능

③ 체험·교류 부문

- 체험·교류 단계는 농업생산과 함께 대부분의 계획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축제·탐방로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
 - 축제(구례 산수유꽃축제, 제주 밭담축제 등), 탐방로(청산도 슬로길 42.195km, 제주 탐방코스 8.5km), 체험프로그램(장흥 청태전 발효체험, 상주 꽃감건조 체험), 전시·교육시설(담양 죽녹원, 제주 교육관) 등이 주요 사업 유형
 - 체험시설·안내센터 등 물리적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음
- (토지이용 영향) 체험·교류 사업은 관광·서비스 용도의 토지이용을 수반하며, 농업유산 경관의 보전과 방문객 편의 간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됨. 탐방로·안내시설·주차장·화장실 등 기초 편의시설은 경관 훼손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체험테마공원이나 숙박시설은 유산 경관과 충돌할 수 있음
 - 특히 구례 산수유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골프장 등 관광 개발 압력은, 체험·교류 사업의 확대가 보전이 아닌 개발로 전환될 위험을 보여줌³³⁾

④ 정주·생활 부문

- 정주·생활 단계는 대부분의 계획에서 미흡한 영역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계획이 주를 이루며, 주거환경 개선이나 정주 인프라 확충 등 물리적 사업은 드물게 나타남

33) 정연미. (2023). 산수유마을로는 성이 안 차? 구례군 골프장 건설 강행 논란. 축제뉴스 6월 24일 기사.

- 예외적으로 구례 산수유는 고령친화도시·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계획에 포함
- 상주 꽃감은 감나무밭-건조시설-주거지의 통합경관 자체가 정주 환경을 구성
- 울진 금강송은 귀농·귀촌 연계와 빈집 정비 사업을 포함
- (토지이용 영향) 정주·생활 사업은 주거·생활 인프라의 유지·개선과 농업유산 경관 보전 간의 균형이 요구됨. 농업유산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전통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건축물의 형태·재료·높이 등에 관한 경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빈집·유휴지를 농업유산 관리(체험 공간, 귀농인 주거 등)에 활용하는 토지이용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주의 통합경관 모델은 정주 공간 자체가 유산 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례로, 주거-생산-가공이 일체화된 경관을 지구 차원에서 보전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부분별 분석 종합

- (농업생산 부문) 전통농업 활동 유지를 위한 보전적 토지이용은 모든 농업유산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규제 및 관리 수단은 울진(산림자원보호구역)과 구례(반출금지 조례) 등 일부에만 존재
- (가공·유통 부문) 준산업적 토지이용은 구례의 산업특구와 상주의 유통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촌지역 내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계획이 부재하고, 관련 계획·사업 연계도 미흡
- (체험·교류 부문) 탐방로·축제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물리적 시설의 입지·규모에 관한 공간 계획이 미흡
- (정주·생활 부문) 전반적으로 가장 취약하여 구례·상주·울진 외에는 마을 단위의 물리적 정주사업이 거의 없음

[표 3-10] 가치순환 단계별 보전 및 활용계획 주요내용

유형	지역	농업생산	가공·유통	체험·교류	정주·생활
수계 연동형	청산도 구들장 논	구들장논 복원·정비 (핵심보전구역 195필지) [보전: 농지전용 방지]	[-]	슬로길 42.2km 체험프로그램·오너제 [관광: 탐방로·동선]	주민역량강화 중심 [소프트웨어]
수계 연동형	강진 연방죽	연방죽 수리시설 복원 논습지 생태보전 [보전: 수리시설 유지]	연(蓮) 활용 상품개발·생산시스템 구축(주민소득사업 [소프트웨어])	수리시설 탐방 해설 프로그램 [관광: 소규모]	경관보전·정비 주민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유형	지역	농업생산	가공·유통	체험·교류	정주·생활
산림 공생형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전통 관개수로 복원 금강송 보전·송이 채취 화전농업 복원 [보전: 산림자원보호 구역 중첩 지정]	송이·임산물·간벌재 상품개발 및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금강송 숲길 탐방 안내판·이정표 조성 숲학교·체류형 프로그램 [관광: 탐방로가 구역 관통하는 연결 축]	금강송군락지 마을 화전민촌 복원 마을유물관 조성
산림 공생형	장흥 발표차 청태전	야생차밭 보전 전통 차다·발효 전승 [보전: 비기계화 전통방식 유지]	9개 다원 자가가공 분산·소규모 [기존 다원 활용, 신규시설 미계획]	보림사 차문화 체험 청태전 발효 체험 [관광: 거점형 집중]	주민 역량강화 정주 직접사업 부재 [소프트웨어]
수목 군락형	구례 산수유	휴경지 복원·공동관리 노거수 보호(249주) [보전: 반출금지 조례 보호수 지정]	산업특구(665,925㎡) 협력기업 42개소 가공식품 연구개발 [준산업: 산업특구가 별도 법적 장치로 기능]	산수유꽃축제 산수유길 탐방 [관광: 마을 전체가 축제 공간]	고령친화도시 연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주거개선: 구체적 정주사업]
수목 군락형	담양 대나무밭	대나무밭 보전·확대 죽순 생산체계 [보전: 경관직불 수준의 관리]	대나무 산업단지 육성 [준산업: 전략으로 구체적 계획 없음]	죽죽원·관방제림 탐방 대나무공예 체험 [관광: 체험동선]	마을경관 정비 죽림육장 [경관정비: 주민편의 겸용]
생 산 - 가공 연계형	완주 생강 전통농업	생강 재배단지 집약화 종강 보급체계 [보전: 주산지 생산기반 유지]	생강 가공시설 계획 (세척·건조·분말) [준산업: 생산지 인근 신규 배치 계획]	생강축제 체험농장 운영 [관광: 소규모]	주민교육 중심 정주기반 사업 미흡 [소프트웨어]
생 산 - 가공 연계형	상주 전통꽃감	감나무밭 보전 전통건조(덕장건조시설) 기술 전승 [보전: 통합경관 자체가 보전 대상]	꽃감유통센터(허브) 농가·마을별 건조시설 복원·정비 [준산업: 네트워크형 가공·유통 체계 구축]	에코뮤지엄 탐방 꽃감건조 체험 [관광: 분산거점을 동선으로 연결]	통합경관 보전 마을환경 정비 [경관통합: 정주=보전 일체]
적지 분산형	제주 발달	발달 복원·관리 우수관리지구 10개 권역 공모 [보전: 공모방식 거점화]	특화브랜드 개발·농산업 확대 [소프트웨어: 물리적 가공시설 미지정]	탐방코스 3개(8.5km) 체험테마공원·축제 농업유산교육관(326억) [관광: 특정 권역 집중]	마을 단위 정주사업 부재
적지 분산형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구기자 재배 주산지 집중 [보전: 관리 프로그램 초기 상태]	[미정]	체험학교 운영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미정]

출처: 완도군(2023); 강진군(2022); 울진군(2022); 장흥군(2020); 구례군(2024); 담양군(2021); 완주군(2022); 상주시(2021); 제주특별자치도(2014); 청양군(2025)

주1. [] 안은 해당 사업이 수반하는 토지이용 성격 표기

[보전] 전통농업 토지이용 유지·보전, [준산업] 가공시설 등 건축물 수반, [관광] 탐방·체험·편의시설 수반, [소프트웨어] 물리적 토지이용 변화 미수반, [경관정비] 기존 경관의 정비·개선, [경관통합] 생산·정주가 일체화된 경관 보전, [주거개선] 주거환경·정주 인프라 개선, [—] 해당 부문 계획 부재

주2. 각각의 계획은 수립 단계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계획 간 비교보다는 각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토지이용 영향에 초점

3) 유형별 공간관리 현황과 한계

- 앞서 분석한 가치순환 단계별 사업의 토지이용 영향을 바탕으로, 5개 공간유형별로 고유의 공간관리 특성과 한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수계연동형: 청산도, 강진) 두 계획 모두 수리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의 복원·보전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간 계획은 미흡
 - 가공·유통 부문은 신규 시설 계획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청산도)하거나 상품개발 계획(강진)에 머물러 있음. 청산도는 관광 동선 계획이 존재하나,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한 토지이용 관리 체계는 제시되지 않음
- (산림공생형: 울진, 장흥) 농업자원이 산림에 위치하여 마을과의 관계보다 핵심지역의 토지이용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실효적 수단은 미흡
 - 울진은 핵심구역·완충구역·특별관리구역 3단계로 구역을 세분화하고, 산림보호법상 산림자원보호구역이 특별관리구역과 중첩 지정되어, 10개 사례 중 유일하게 실효적인 행위 제한이 작동하나 이는 농업유산 제도가 아닌 산림보호 제도에 의한 것
 - 장흥은 일부 지역(보림사 주변)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일반관리구역을 구분하는 등 자원 속성에 기반한 구역 설정을 시도하였으나, 구역별 관리 기준은 마련되지 않음
- (수목군락형: 구례, 담양)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유통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전과 육성 간의 공간적 균형은 미흡
 - 구례 산수유마을은 산업특구가 가공·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특구 내 개발이 농업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
 - 담양의 경우 대나무 연계 6차산업, 산업단지 육성 등에 관한 전략 수준에서 언급하나 구체적인 입지 계획은 미정
- (생산-가공연계형: 완주, 상주) 생산-가공의 공간적 연계가 보전 가치 자체를 구성하는 유형으로 마을 내에서 준산업적 토지이용이 계획적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시사
 - 마을별 건조시설(상주)이나 가공시설(완주)의 입지나 전통 방식의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한계
- (적지분산형: 제주, 청양) 광역에 분산된 자원의 관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전 대상 면적이 넓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 제주는 우수관리지구 공모를 통해 주민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비축제와 같은 수단을 제시하였으나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마을 단위의 정주 사업 연계 부재
 - 청양은 3개 리를 핵심보전구역으로 설정하였으나 초기 단계로 관리 체계는 미확립

3. 소결: 공간관리의 문제점과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시사점

■ 공간관리의 구조적 문제점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관리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보임
- (공간적 범위의 한계) 다수 유산이 행정구역 단위로 광역 지정되어 자원의 실제 분포·연결 방식과 일치하지 않으며, 핵심지역을 설정한 경우에도 경계의 근거와 정밀도가 유산 별로 상이하여 토지이용 관리의 단위로 활용하기 어려움
 - 이는 현재의 공간적 범위가 가치 선언의 단위로는 기능하나, 보전·활용을 위한 관리 단위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
- (관리 수단의 부재) 실효적인 행위 제한이 작동하는 사례는 타 법률 중첩에 의한 울진과 장흥(일부 지역)이 유일하며,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의제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상 주민협정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어느 보전·활용계획에서도 마련되지 않음
 - 보전·활용계획이 전통농업의 복원·유지를 명시하면서도 인접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막을 수단이 없는 실정
- (보전·활용의 공간적 불균형) 사업이 보전적 토지이용에 집중된 반면, 가공·유통의 준산업적 토지이용, 체험·관광 시설의 입지, 정주환경 개선은 계획 수준에 머물거나 부재하여 가치순환이 공간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
 -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유산지구가 ① 자원의 연결 방식에 기반하여 공간 범위를 재설정하고, ② 핵심보전구역을 통해 보전적 토지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③ 연계활용구역을 통해 가공·체험·정주 기능을 계획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

■ 공간 요소의 연결 방식에 기반할 범위 설정 필요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 특성은 핵심 자원 자체보다 자원 간 연결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농업유산지구의 범위 설정도 이와 같은 연결 방식에 기반할 필요가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핵심 공간 요소와 연결 방식을 분석한 결과, 수계 연동형, 산림 공생형, 수목 군락형,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적지 분산형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각 유형은 핵심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근거와 공간관리의 초점이 상이함
 - 수계 연동형은 유역 단위 경계 설정과 수리시설 연결성 유지가 핵심
 - 산림 공생형은 산림-농지 경계면을 기반으로 생태적 공생관계를 보전하는 데 초점
 - 수목 군락형은 군락의 분포 경계와 밀도 유지가 곧 유산의 존속 조건
 - 생산-가공 연계형은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기능적 연계 권역이 지구의 기본 단위
 - 적지 분산형은 분산된 자원 중 핵심 거점을 선별하여 차등 관리하는 방식이 적합
- 이는 시행령이 제시하는 “핵심자원 분포지역”이라는 기준만으로는 농업유산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려우며, 농업유산의 공간적 연결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
- 다만, 일부 농업유산은 복합적 연결 방식을 보이므로 유형 분류를 경직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주된 유형의 관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부차적 유형의 관리 수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

■ 객관적 방법론과 공통 기준 마련 필요

-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핵심보전구역은 행정리 단위 주산지, 농업자원의 물리적 속성, GIS 기반 정량·정성 분석, 외부 기준 준용의 네 가지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으나, GIS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이 유일함
- 농업유산지구는 법적 규제 및 지원 수단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지구의 범위 설정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한편, 핵심지역 설정 방식은 농업유산별로 차이가 있으나 분석 결과 ① 고유성 및 전통성, ②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③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다양성, ④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공통 속성이 확인되었음
- 이는 유형별로 경계 설정의 근거가 다르더라도 지구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유산지구 설정 가이드라인의 기본 요소가 될 수 있음

■ 농업유산의 가치순환 단계를 수용하는 토지이용 도모 필요

- 10개 보전·활용계획을 가치순환 단계별(농업생산-가공·유통-체험·교류-정주·생활)로 분석한 결과, 전통농업 유지를 위한 보전적 토지이용에는 모든 계획이 주력하고 있음
- 하지만 가공·유통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준산업적 토지이용, 체험·관광 시설 배치에 따

른 관광 용도 토지이용, 주거환경 개선과 경관 보전 간의 균형 등에 대한 공간적 계획은 대부분 부재하거나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는 농업유산지구가 농업생산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공-체험-정주를 아우르는 가치순환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구 내부의 기능 분화와 토지이용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 농업유산 보전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토지이용 관리 수단 마련 필요

- 10개 사례 중 실효적인 행위 제한이 작동하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과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보림사 주변) 뿐이며, 이마저도 농업유산 제도가 아닌 별도의 산림보호 제도에 의한 것임
 - 구례 산수유의 반출금지 조례는 '나무 단위'의 보호에 그치고 '토지 단위'의 전용 방지에는 이르지 못하며, 제주 발담의 토지비축제 구상은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전 및 활용계획에 전통농업의 복원과 유지를 명시하면서도 인접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수단이 부재한 실정
- 농업유산지구 지정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의제, 주민협정, 경관 가이드라인 등 복합적 관리 수단을 지구 지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제4장

농업유산지구 설정 기본방향

1. 농업유산지구의 목표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와의 관계
2. 농업유산지구 설정 원칙과 고려사항

1. 농업유산지구의 목표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의 관계

1) 농업유산지구의 목표상

■ 농업유산지구의 제도적 위상과 목표

- 농업유산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하나로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이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토지이용 관리 수단
- 그러나 농업유산지구는 단순한 보전 규제 구역이 아니라, 전통농업의 지속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 FAO가 세계중요농업유산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으로 제시하는 ‘동적 보전(Dynamic Conservation)’의 관점에서, 농업유산지구의 바람직한 목표상은 “동적 보전을 통한 농업유산의 가치 보전과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는 농업유산 시스템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사회적 요구, 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하면서도 고유한 기능과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업유산지구는 농업유산의 핵심 가치³⁴⁾가 유지·전승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주체의 주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 농업유산지구의 가치순환 모델

-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은 ‘농업생산→가공·유통→체험·교류→정주·생활’로 이어지는 가치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가능³⁵⁾
- 그러므로 농업유산지구는 이러한 가치순환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함

34) 농업유산을 구성하는 전통농업 기술 기법, 농업경관, 생물다양성, 공동체 문화 등

35) 2장 3절; FAO, 2005; 김지호·정명철, 2020 참조

- 농업생산 단계: 농업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농지와 농업기반시설을 보전하고, 전통 농업 유지를 위한 토지이용 관리 시행
 - 가공·유통 단계: 농업유산 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규모 가공·저장·판매 시설의 입지를 지구 내에서 허용하고 촉진하되, 대규모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과 연계하여 배치
 - 체험·교류 단계: 방문객의 체험·교육·관광 활동이 가능한 시설과 동선을 농업유산 경관과 조화롭게 배치
 - 정주·생활 단계: 농업유산 마을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유지·개선하되, 전통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
- 농업유산지구는 이러한 가치순환의 전 단계를 공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구 내부의 기능 분화와 토지이용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2) 농업유산지구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의 관계 정립

■ 두 제도의 성격과 역할 분담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농업유산지구 제도는 동일한 농업유산 자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제도적 목적과 성격이 상이. 따라서 두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농업유산지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표 4-1]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농업유산지구의 역할

구분	국가중요농업유산	농업유산지구
성격	포괄적 가치 선언(유산 인정)	선별적 공간관리(토지이용 관리)
근거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정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공간 범위	시·군 전역 또는 특정 읍·면(광역적)	핵심 자원 분포지역 중심(선별적)
관리 수단	보전·활용계획, 모니터링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구 의제, 주민협정
핵심 역할	무엇을 보전할 것인가(가치 정의)	어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공간 관리)

출처: 연구진 작성

■ ‘포괄적 지정- 선별적 관리’ 모델

- 국가중요농업유산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농업유산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제도라면, 농업유산지구는 그 가운데 토지이용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정’하여 공간관리를 시행하는 제도

- 이를 ‘포괄적 지정-선별적 관리’ 모델이라 정의할 수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농업유산지구의 주된 대상이 되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시·군 전역이나 수만 ha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전부 농업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관리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농업유산지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핵심 공간으로 농업유산의 핵심 가치가 집약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역, 보전과 활용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지역, 관리 주체(주민)의 역량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 농업유산 가치 인정의 선행

- 농업유산지구는 정책적 지원(사업비 배분, 규제 특례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 지정에 앞서 해당 자원의 농업유산으로서 가치 인정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
 - 국가중요농업유산이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미 가치 인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농업유산지구 지정으로의 이행이 자연스러움
- 시행령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 외에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농업유산지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가치 인정 절차 없이 곧바로 토지이용 관리 수단인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농업유산 가치 인정 제도를 마련하거나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업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병행하여, ‘기초조사 → 가치 인정 → 지구 지정’의 단계적 경로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때 가치 인정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 또는 시·도의 농업유산 보전·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심의 절차에서 농업유산의 가치 인정을 별도 안건으로 다루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두 제도 간 절차적 연계 방향

-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농업유산지구 제도를 연결하는 절차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제도의 실효적 연계를 위해 다음의 방향이 고려될 필요
- (1)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활용계획에서 농업유산지구 지정 대상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지구 지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
- (2) 농업유산지구 지정 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계획에서 제시한 핵심지역의 설정 결과를 참고하되, 토지이용 관리의 관점에서 범위를 재검토

- (3) 농업유산지구 지정·운영 결과를 국가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에 반영하여 두 제도 간 환류 체계를 구축

■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관계

- 농업유산지구는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공간적 관계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며, 이 때 구역 간 중첩 또는 연계의 판단은 해당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 (1) 농촌마을보호지구와의 관계
 -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상 마을이 농업유산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경우에는 농업유산지구 내에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중첩 지정하여, 정주기능 강화와 농업유산 보전을 동시에 도모
 - 반면, 마을이 농업유산 시스템의 직접적 구성요소라기보다 관리 주체의 거주 공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첩 지정보다는 연계 방안을 강구. 이 경우 농업유산지구 인접 마을을 별도의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두 지구 간 탐방로·교류 동선·경관축 등으로 공간적 연결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
- (2)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의 연계
 - 하나의 시·군 내에 복수의 농업유산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이들 지구 간 거점 역할을 하는 위치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연계 지정하여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농업유산 산물의 대규모 가공·유통·체험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농업유산지구 자체에 과도한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가치순환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농업유산지구 내에서도 소규모 가공·판매 시설, 안내·해설 시설, 경관 시설 등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에 직접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에 적극 권장
 -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농업유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방문객의 현장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직접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서 제시하는 권장시설(안내·해설, 교육·전승, 보전·관리 시설, 방문 편의시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등)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
- (3) 경관농업지구와의 연계
 - 농업유산지구의 외연에 경관농업지구를 연계 지정하면, 농업유산 경관의 완충 기능과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관광 자원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음
 - 특히 적지 분산형 농업유산의 경우, 핵심 거점 간 연결 축에 경관농업지구를 배치하여 경관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2. 농업유산지구 설정 원칙과 고려사항

1) 농업유산지구 구역 설정의 원칙

■ 원칙1: 농업시스템의 완결성

- 농업유산지구의 범위는 해당 농업유산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 요소들의 연결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함
- 이는 농업유산이 개별 자원의 집합이 아니라 자원 간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원칙2: 가치순환의 공간적 수용

- 농업유산지구는 농업생산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공-체험-정주를 아우르는 가치순환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여야 함
- 지구의 범위는 전통농업의 핵심 자원 분포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소규모 가공·판매 시설, 체험·교류 거점, 주민 정주 공간 등 가치순환에 필요한 공간을 함께 포괄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함
- 농업유산 마을(정주 공간)은 이러한 가치순환의 관리 주체가 거주하는 공간이자, 방문객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지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가치순환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지구 안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원칙3: 관리 의무 이행 가능성에 기반한 선정

- 농업유산지구의 범위는 시장·군수가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여야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하더라도 농업유산지구는 관리 주체의 역량과 사업 투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한정
- 특히 넓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가운데 일부만을 농업유산지구로 선정하게 되면,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의 기준을 ‘지원의 특혜’가 아닌 ‘관리의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관리 의무 이행 역량 기반의 우선 선정: 주민협의체·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농업유산의 관리 주체가 구성되어 있고 실제 활동 실적이 있는 지역, 주민협정 체결 의사가 있는 지역을 우선 지정
 - 이때 지구 지정은 곧 전통농업 방식의 유지, 경관 관리, 모니터링 참여 등 관리 의무를 수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지구 지정이 일방적 특혜가 아닌 권리와 의무의 결합임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지구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어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향후 관리 역량이 갖추어지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확대 경로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비지정 지역의 자발적 역량 구축을 유도
 - 농업유산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보전·활용계획에 따른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지구 내부 공간 구성: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

- 농업유산지구 내에는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세부구역별로 규제와 지원의 수준을 달리 설정하여 보전의 실효성과 주민의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핵심보전구역은 가치순환의 출발점인 농업생산 단계를 공간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계활용구역은 주로 가공·유통, 체험·교류, 정주·생활 단계를 수용
- 다만,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의 구분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업유산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핵심보전구역

- 핵심보전구역은 농업유산의 핵심 가치가 집약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통농업 시스템의 주요 요소가 분포하며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설정
- (대상) 전통농업 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핵심 재배지, 농업유산의 작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수리시설 등), 농업유산 경관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전된 구역
- (관리 방향) 농업유산 시스템의 공간적 연결성 유지, 농지의 타 용도 전용 제한, 유산 경관을 훼손하는 대규모 건축·토목 행위 제한, 핵심 자원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복원 시행
 - 핵심보전구역 내에서도 전통농업 방식의 보전 정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할

- 수 있음. 전통 품종·농법·재배방식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전통농업 방식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 그 외의 핵심보전구역에서는 농업유산의 경관과 시스템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된 농업방식(병충해 방제 개선, 관개 효율화 등)도 허용
 - 이러한 차등 관리를 통해 전통농업의 핵심을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생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
- (규제 수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전 규제를 적용. 주민협정을 통한 자율 관리 규약의 체결이 기본적 수단이 되며, 필요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 의제를 검토
 - (지원 수준) 전통 방식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연계, 전통농업 전승 지원, 종자·종묘 보급, 공동의 전통 기반시설 유지·복원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연계활용구역

- 연계활용구역은 핵심보전구역을 둘러싸거나 인접하여 완충 기능을 수행하면서, 농업유산의 활용(가공·체험·정주 등)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하는 구역
- (대상) 핵심보전구역 주변의 농경지, 농업유산 마을(정주 공간), 소규모 가공·판매 시설 입지 가능 지역, 체험·관광·경관 시설 배치 가능 지역
- (관리 방향) 농업유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가공·유통·체험·정주 관련 시설의 입지를 적극 허용하고, 핵심보전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의 완충 기능을 수행한다. 소규모 가공·판매 시설, 안내·해설 시설, 경관 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 (규제 수준) 핵심보전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 건축물의 형태·색채·높이 등에 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시설 입지 자체는 적극 허용
- (지원 수준)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소규모 가공·판매 시설 설치 지원, 마을경관 정비 지원, 빈집 활용 사업 지원 등 활용 중심의 지원을 제공

[표 4-2] 농업유산지구 내 세부구역 구분 및 운용 방향(안)

구분	성격	규제 수준	지원 수준
핵심보전구역	핵심 자원 분포, 시스템 연결성 유지 ※ 전통농업 원형 유지 필지: 보전 최우선 + 인센티브 우선 배분 검토	높음(전용 제한, 경관 훼손 행위 제한, 주민협정)	높음(전통농업 전승, 농업기반시설 복원 등)
연계활용구역	완충 기능 + 가공·체험·정주 기능 수용. 소규모 시설 설치 권장	완화(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 입지 허용)	활용 중심(체험 인프라, 가공·판매 시설, 마을경관 정비 등)

출처: 연구진 작성

3) 지구 설정 시 공통 고려사항

■ 농업유산지구 지정의 공통 요건

- 농업유산지구가 갖추어야 할 공통 요건은 3장에서 20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핵심지역 설정 방식 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 가지 공통 속성, 즉 ① 고유성 및 전통성, ②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③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다양성, ④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이 네 가지 공통 속성은 시행령 [별표1]의 지정 기준과 시행계획 수립 지침상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4-3] 농업유산지구 지정 요건 판단 기준

공통속성	판단 기준	시행계획 수립 지침 연계
고유성 및 전통성	전통농업 방식의 현존 여부, 원형 보전 상태	농업기술, 농업경관, 공동체문화 등 고유 자산의 유지·전승 가능성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자원 간 유기적 관계 작동 여부, 자원 밀집 정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산과 마을을 연계하여 발전 가능한 지역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다양성	농업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고유 생태 가치	농업적·생태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	주민 참여 조직 구성, 활동 실적, 관광·6차산업 잠재력	주민협의체 등 조직 구성, 지속적 활동·운영 실적, 관광·교육·브랜딩 잠재력

출처: 연구진 작성

■ 현행 용도지구 의제의 선별적 활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4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국토계획법상 경관지구·보호지구 등의 의제가 가능하나, 현행 용도지구 유형 중 농업유산의 복합적 가치(경관·생태·문화·지식·공동체)를 통합적으로 포섭하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음
- 경관지구는 건축물의 높이·형태·색채 등 시각적 경관 요소에, 보호지구는 특정 시설·지역의 정태적 보호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통농법의 계속적 실천이나 지식·문화의 전승이라는 농업유산 고유의 동태적 가치를 규율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용도지구 의제는 농업유산지구 관리의 주된 수단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서 지구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기존 유형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경관 훼손 방지나 취락 보호 등 특정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³⁶⁾

36) 농업유산의 복합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유형의 마련에 대해서는 5장에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

- 농업유산 경관 보전이 특히 중요한 구역(다랑논·밭담·대나무밭 경관 등)에는 경관지구 중 자연경관지구나 특화경관지구³⁷⁾ 의제를 검토할 수 있음
- 농업유산 마을이 지구 내에 포함되는 경우(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중첩 지정하는 경우) 보호취락지구 의제를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용도지구 의제만으로는 농업유산지구의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일차적인 관리 수단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과 농촌특화지구 계획이 되어야 함
- 전통농업 방식의 유지, 농지 전용 방지, 농업유산 가치 훼손 행위의 제한 등 농업유산 고유의 관리 수요는 주민협정을 통해 자율 규약을 마련하고, 농촌특화지구 계획의 사업 연계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

■ 단계적 지정과 적응적 관리 검토

- 농업유산지구의 설정은 초기에는 일회적 결정이 아닌 단계적·적응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핵심 거점부터 시작하여 성과를 축적하면서 지구를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1단계: 관리 주체의 역량이 확보되고 보전·활용 사업이 추진 중인 거점 우선 지정
 - 2단계: 1단계 지구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인접 지역으로 지구를 확대하거나 신규 지구를 추가 지정. 무엇보다 관리 역량을 갖춘 지역의 추가 편입을 적극 검토
 - 3단계: 지구 운영의 경험이 축적된 이후 구역별 규제·지원 수준의 차등 적용을 정교화하고, 용도지구 의제 등 토지이용 관리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
- 또한 농업유산은 기후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농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공간적 분포와 상태가 변화하므로, 지구의 경계와 관리수단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특히 작물의 특성상 연작이 어려워 재배 공간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농업유산은 거점(가공·판매·전승)을 중심으로 주된 재배지를 묶어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경계 재조정

37)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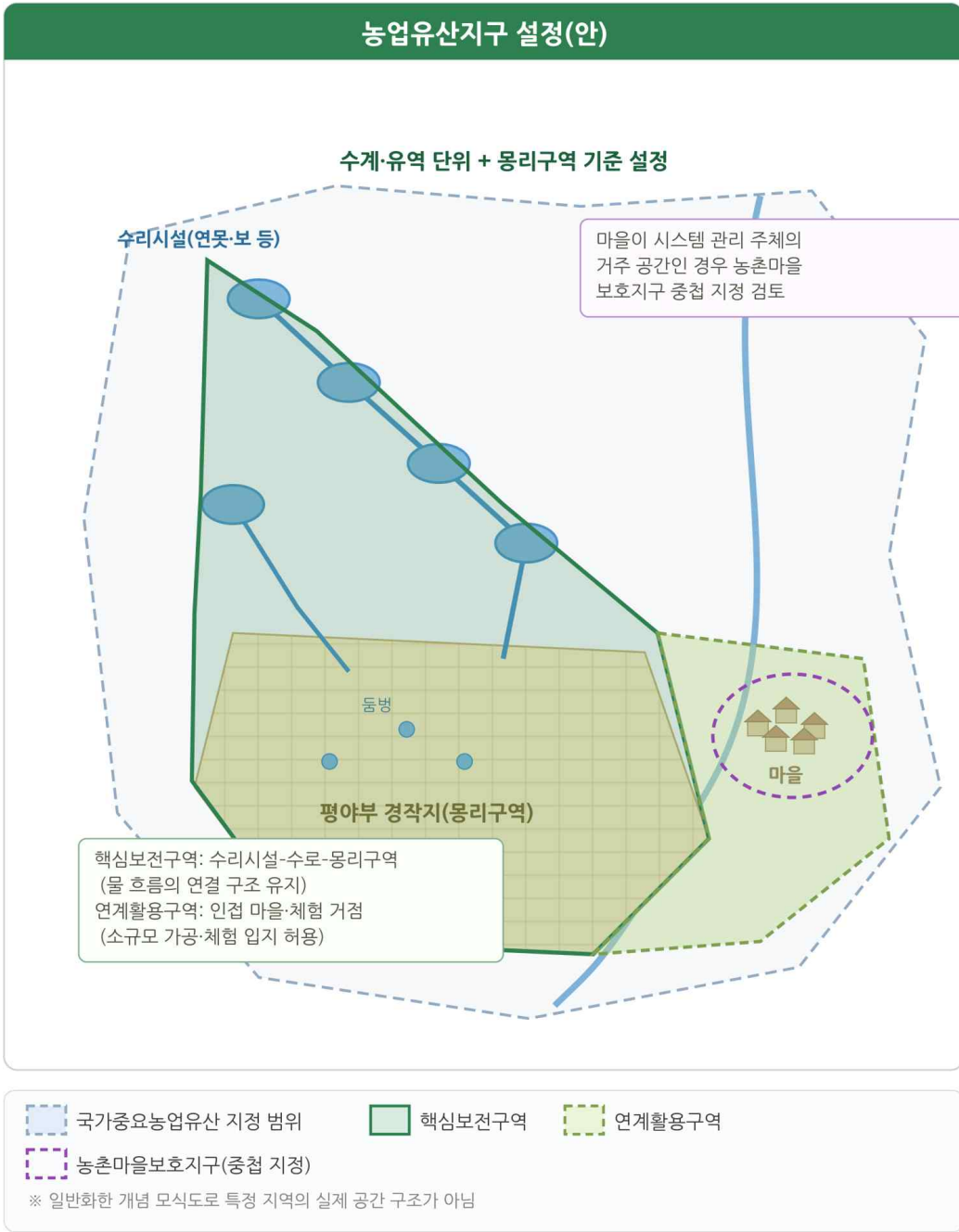
4) 농업유산 공간 유형별 지구 범위 설정 방법

- 농업유산지구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앞서 제시한 5개 농업유산 공간 유형별로 차별화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수계연동형에서는 물의 흐름이 경계를 결정하므로 수리시설의 몽리구역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
 - 반면 적지 분산형에서는 자원이 광역에 흩어져 있어, 밀도·전통성·주민역량 등 복합 기준으로 거점을 선별해야 하는 판단의 영역이 큼
 - 산림 공생형은 농지와 산림을 함께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됨.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신청 가이드라인도 전통적 농업지역과 밀접하게 통합·연계된 산림을 핵심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목군락형은 군락의 분포 경계와 밀도 유지가 곧 유산의 존속 조건이므로, 군락 밀도 분포에 근거한 경계 설정과 정기적 관리가 핵심
 - 생산-가공 연계형에서는 재배지와 가공·저장 시설의 기능적 연결이 끊어지면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므로, 지구 범위 설정 시 이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됨
- 단, 일부 농업유산은 복합적 유형에 해당하므로 경직되게 유형을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

[표 4-4] 농업유산 공간 유형별 범위 설정 방법

구분	경계 설정 단위	1차적 경계 기준	유의사항
수계연동형	수계·유역 단위	수리시설의 몽리구역(관개 수혜 면적) + 수리시설 자체 + 인접 마을	수리시설이 광역 분산된 경우(의성, 고성) 연결성이 높은 단위별 복수지구 설정 또는 핵심 수리권역 선별 지정
산림공생형	산림-농지 경계면	표고·경사도에 따른 전이대, 수직적 분포 범위(산림~농경지~정주지)	농경지뿐 아니라 유기물·수분·미기후를 제공하는 인접 산림 포함(FAO GIAHS 가이드라인 부합). 기존 보호구역 중첩 시 정합성 확인
수목군락형	군락 분포 경계	군락 밀도 분포도 작성, 일정 기준 이상 밀도 지역	군락 축소= 유산 소실이므로 정기적 밀도 모니터링 필수. 구례 산수유 반출금지 조례 등 수목 보호 장치 활용 가능
생산-가공 연계형	기능적 연계 권역	생산자-가공지 간 물리적 거리·기능적 연결(운반 경로, 가공 빈도)	통합경관(재배지-건조장-주거지) 자체가 유산인 경우 전체 포괄. 마을 간 분산 시(서천 한산모시) 복수 지구 또는 거점 마을 중심 설정
적지분산형	핵심 거점 선별	자원 밀집도, 전통성 보전 상태, 주민 참여도, 접근성 종합 평가	광역 전체가 아닌 핵심 거점 선별·집중 관리. 단계적 거점 확대 접근이 적합. 재배지가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거점과 주된 재배지를 묶어 지정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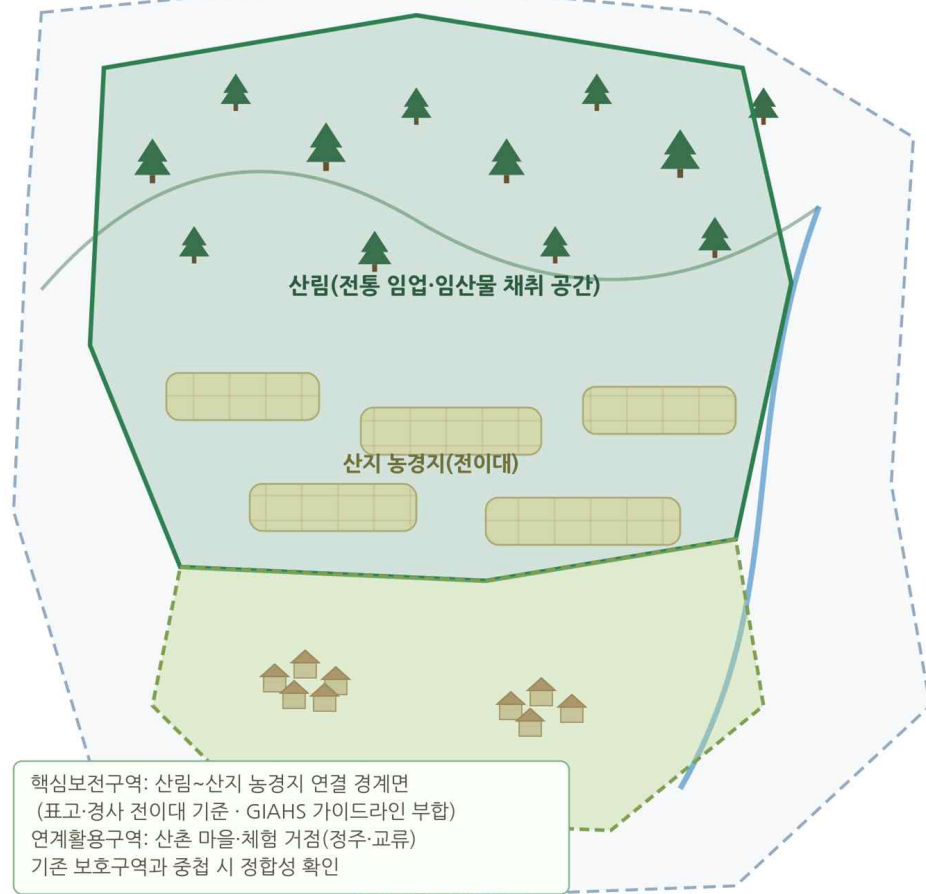


[그림 4-1] 수계연동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농업유산지구 설정(안)

산림-농지 경계면 단위 설정(수직적 분포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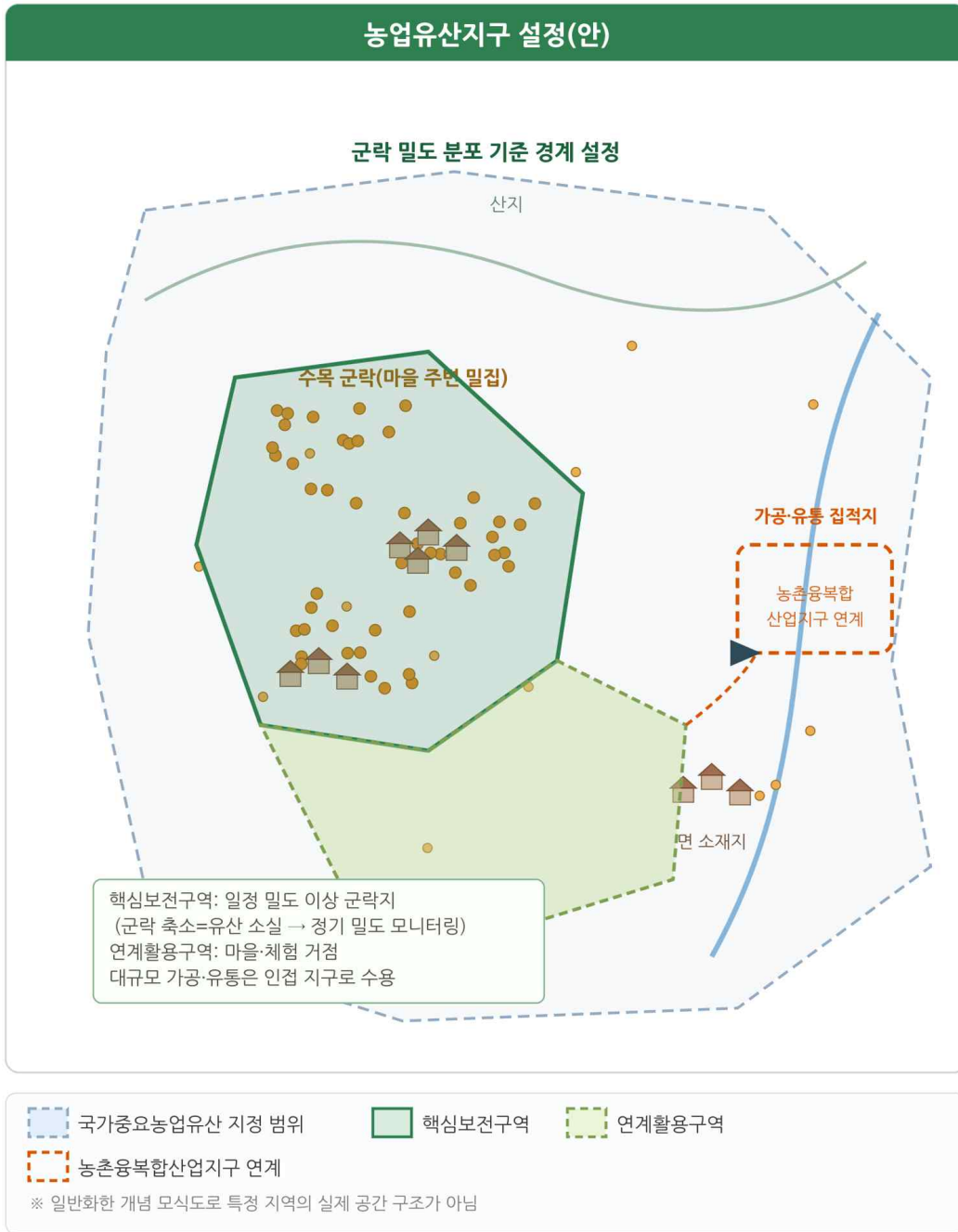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범위
 핵심보전구역
 연계활용구역

※ 일반화한 개념 모식도로 특정 지역의 실제 공간 구조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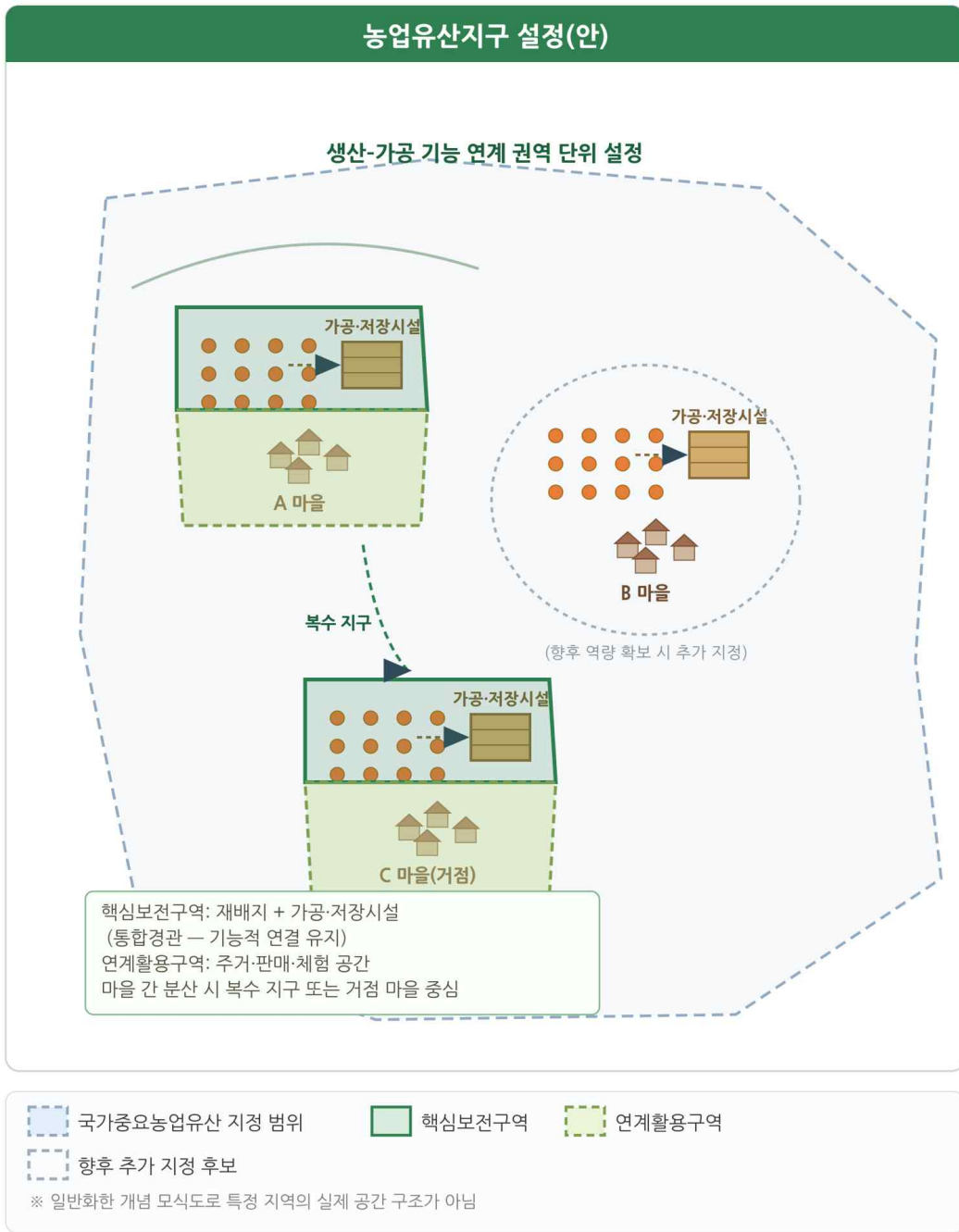
[그림 4-2] 산림공생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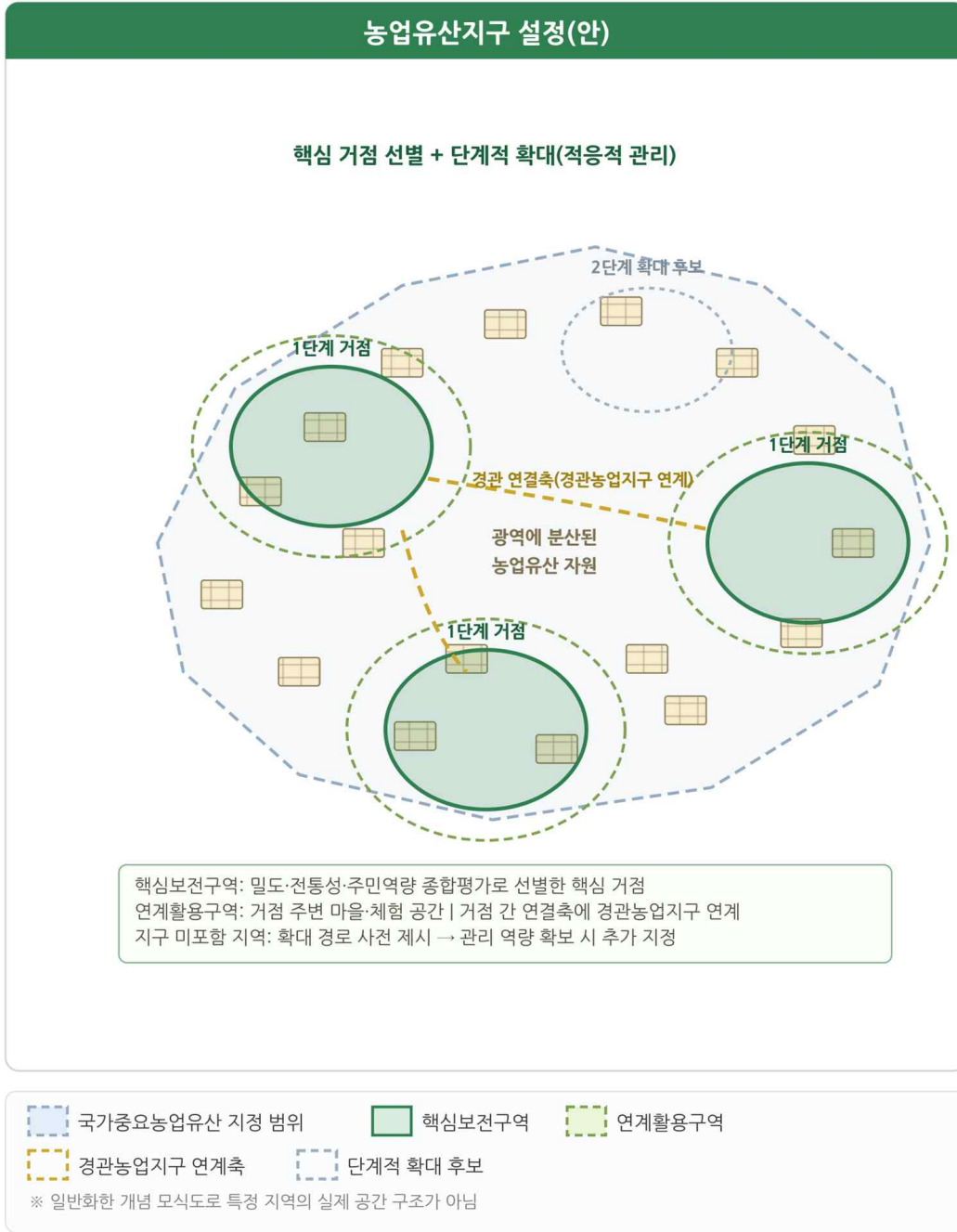
[그림 4-3] 수목군락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4] 생산-가공 연계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5] 적지분산형 농업유산지구 설정(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제5장

결론

1. 농업유산지구 관련 제도 개선
2. 향후 과제

1. 농업유산지구 관련 제도 개선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 개정 제안

- 현행 시행계획 수립 지침(7-3-7)은 (1) 지정 목적, (2) 우선 검토 지역, (3) 권장시설, (4) 지정 요건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 방법론과 다른 제도와의 연계 규정이 없음
- 이에 (4) 지정 요건을 4대 공통 속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범위 설정 방법, 내부 구역 구분, 제도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
- 단, 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형식을 고려할 때 지침 개정이 어려운 경우 향후 별도로 마련하는 농촌특화지구 매뉴얼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표 5-1]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7-3-7 (4) ③ 각 호 개정 [지정 요건]	③ 농업기술, 농업경관, 공동체문화 등 고유한 자산의 유지·전승 가능성을 갖추어 다음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일 것 1. 주민협의체·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조직 구성과 지속적 활동·운영 실적 2. 관광·교육·지역브랜드·6차산업 확장 잠재력과 파급효과 3. 생활환경의 종합적 관리와 농촌마을-유산 연계 발전 가능성 4. 지정 효과의 인구 권역 확산 가능성 ※ 요건이 주민조직·활용 잠재력에 치우쳐 유산 자체의 가치(고유성·관계망·생태)에 대한 판단 기준 부재	③ (현행과 같음) 1. (고유성 및 전통성) 전통농업 방식이 현존하고 고유 자산의 원형이 보전되어 유지·전승이 가능한 지역 2. (유기적 관계망 또는 자원 밀집도) 자원 간 유기적 관계가 작동하거나 자원이 공간적으로 밀집된 지역 3. (생태적 보전 가치 및 생물다양성) 농업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고유한 생태적 가치를 보유한 지역 4. (주민공동체 역량 및 활용 가능성) 조직 구성·운영 실적, 주민협정체결의사, 활용 잠재력을 가진 지역(현행 1·2호 통합) 5. 생활환경 종합 관리·연계 발전 가능성 및 인구 권역 확산 효과(현행 3·4호 통합)
7-3-7 (5) 신설 [공간적 범위 설정 방법]	<신 설> ※ 우선 검토 지역((2))만 규정, 범위 설정 방법론 부재	(5) 농업유산지구의 공간적 범위는 농업유산 시스템의 작동에 필수적인 공간 요소 간 연결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되, 공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① (수계 연동형) 수계·유역 단위로 수리시설의 물리구

구분	현행	개정안
		<p>역, 수리시설 및 인접 마을을 포함. 수리시설이 광역 분산된 경우 단위별 복수 지구 또는 핵심 수리권역 선별 지정 가능</p> <p>② (산림 공생형) 산림-농지 경계면을 단위로 표고·경사도에 따른 전이대와 수직적 분포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유기물·수분·미기후를 제공하는 인접 산림을 포함</p> <p>③ (수목 군락형) 군락 밀도 분포도를 작성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밀도 지역을 경계로 설정하고 정기적 밀도 모니터링 실시</p> <p>④ (생산-저장·가공 연계형) 생산지와 저장·가공시설 간 물리적 거리와 기능적 연결을 기준으로 연계 권역을 설정</p> <p>⑤ (적지 분산형) 자원 밀집도, 전통성, 주민 참여도, 점근성을 종합 평가하여 핵심 거점을 선별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p>
<p>7-3-7 (6) 신설 [내부 구역 구분]</p>	<p><신 설></p>	<p>(6) 농업유산지구는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위하여 지구 내부를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구역 구분은 농업유산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p> <p>① (핵심보전구역) 전통농업이 유지되는 핵심 재배지, 필수 기반시설, 경관 원형 보전 구역으로서 시스템 연결성 유지, 농지 전용 제한, 대규모 건축·토목 행위 제한을 관리 방향으로 함</p> <p>② (연계활용구역) 핵심보전구역의 완충 구역으로서 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하에 소규모 가공·판매, 체험·교류, 정주 시설의 입지를 허용</p>
<p>7-3-7 (7) 신설 [국가중요농업유산 연계]</p>	<p><신 설> ※ 보전 및 활용계획과 지구 지정 간 연계 규정 없음</p>	<p>(7) 국가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 포함) 지정지역에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상 핵심지역의 범위를 참고하되, 토지이용 관리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설정한다.</p> <p>①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가치 인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p> <p>② 지구의 지정 현황 및 운영 성과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관리한다.</p>
<p>7-3-7 (8) 신설 [다른 농촌특화지구 연계]</p>	<p><신 설> ※ 연계 지정의 원칙·방법 미비</p>	<p>(8) 농업유산지구는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① (농촌마을보호지구) 마을이 유산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경우 중첩 지정하고, 그 외에는 인접 마을을 별도 지정하여 탐방로·교류 동선·경관축으로 연계</p> <p>②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대규모 가공·유통·체험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연계 배치하고, 지구 내에는 (3)의 권장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설치를 권장</p> <p>③ (경관농업지구) 지구의 외연 또는 거점 간 연결 축에 연계 지정하여 경관적 완충 기능과 연속성을 확보</p>

출처: 연구진 작성

2)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 제안

- 현행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2호)에 규정된 보전 및 활용계획의 내용에 농업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검토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단계에서부터 향후 농업유산지구로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농업유산지구 지정·운영 결과를 국가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체계에 환류하는 연계 장치를 마련하여, 두 제도 간 정보 공유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표 5-2]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 신설 [보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p>〈신 설〉</p> <p>※ 핵심지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기준과 농업유산지구 지정 연계에 관한 사항이 고시·규칙 모두에 없음</p>	<p>제13조의2(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규칙 제2조의7에 따른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p>1. 핵심지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핵심지역의 범위는 농업유산의 공간 유형별 특성에 기반하여 설정한다.</p> <p>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의 지정 후보 범위 및 토지이용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p> <p>② 시장·군수는 보전 및 활용계획을 갱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제16조 제3항 신설 [모니터링 항목 보완]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현상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p> <p>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p> <p>※ 모니터링에 포함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핵심지역 내 토지이용의 변화(농지의 타 용도 전용, 개발행위 등)</p> <p>2.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업유산지구의 지정 현황 및 운영 성과(전통농업 유지 실태, 경관 변화, 주민 참여 현황 등)</p>
제17조② 제5호 신설 [실태조사 항목 보완]	<p>② 실태조사 시 조사 사항</p> <p>1.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 정도</p> <p>2. 주변의 변화상태</p> <p>3. 보호·홍보 시설물의 상태</p> <p>4.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p>	<p>② 및 1.~4. (현행과 같음)</p> <p>5. 핵심지역 내 농지의 타 용도 전용, 개발행위 등 토지이용의 변화에 관한 사항</p>

출처: 연구진 작성

3) 장기적인 법률 개정 검토사항

■ 지역농업유산 제도 도입 연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농업유산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농업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가치 인정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
 - 지역농업유산 제도가 농업유산지구 지정의 전 단계로서 가치 인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 설계

■ 농업유산지구의 실효적 관리 수단 강화(농업유산보호지구 신설)

- 현재 농업유산지구 지정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유산지구 고유의 관리 수단을 강화할 필요
 - 농업유산의 복합적 가치(경관·생태·문화·지식·공동체)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용도지구 유형의 신설 검토
 - 현행 「국토계획법」상 경관지구·보호지구 등은 농업유산의 동태적 가치를 규율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유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 유형[(가칭)농업유산 보호지구]의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농업유산지구 내 행위 제한 및 허용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핵심보전구역에서의 농지 전용 제한, 경관 훼손 행위 제한 등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 농업유산지구 표준조례(안) 마련

- 현재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는 공간적 범위 설정이나 구역별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미비하므로, 기존 조례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유산지구 표준조례(안)를 마련하여 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지구 지정·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
 - 표준조례(안)에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의 구분, 구역별 관리 원칙, 주민협정 체결 지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등을 포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업유산지구와 기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

2. 향후 과제

1) 후속 연구 과제

■ 농업유산지구 설정 매뉴얼 개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 공간 유형별 범위 설정 방법과 공통 요건을 바탕으로, 지자체 실무자가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매뉴얼에는 농업유산의 공간 유형 판별 절차, 핵심보전구역 경계 획정의 구체적 기법 (GIS 분석 방법론 포함), 연계활용구역 설정 기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구 지정 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별 보전·활용계획의 핵심지역 설정 결과를 토지이용 관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농업유산지구 범위로 전환하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

■ 농업유산지구 내 세부 구역별 관리 수단 구체화 연구

- 본 연구에서는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의 구분 방향과 관리 원칙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구역별 행위 제한·허용 기준, 용도지구 의제의 구체적 적용 방안, 주민협정의 표준 내용, 인센티브 설계 등은 향후 연구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

■ 농업유산지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 농업유산지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임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주민협의체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민협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농업유산지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모델, 지리적 표시제와 생산자 조직을 통한 경관관리 등 협력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 정책 사업 과제

■ 농업유산지구 시범 모델 구축 사업 추진

- 농촌다움을 대표하는 농업유산을 자원으로 하여 농촌 재생을 시도하기 위한 모델 구축
- 농업유산지구는 아직 실제 지정·운영 사례가 없으므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지구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 추진 필요
- 시범 모델 구축 사업은 농업유산의 공간 유형별로 대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 지정부터 관리·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설계·적용
 -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구 범위 설정,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의 구분, 주민협정 체결 등 지구 운영의 전 과정을 시범 적용
 - 현행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범 지구 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공익직불제·농촌 관광자원화 사업 등 기존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유산의 지속적 보전·관리 모델 구축
 - 시범 사업의 운영 성과와 현장 과제를 축적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 매뉴얼,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지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지침 구체화에 반영

■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활용계획 갱신 지원

- 국가중요농업유산 20개소 중 상당수는 보전·활용계획이 수립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계획 수립 당시에는 농업유산지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 수립되었음
- 따라서 기존 보전·활용계획을 농업유산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갱신 시 농업유산지구 지정으로의 이행 유도

■ 농업유산지구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협정 체결 지원 사업

- 농업유산지구의 실효적 관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좌우되므로 농업유산지구 지정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 주민협정에는 전통농업 방식의 유지, 경관 관리 약속, 농업유산 모니터링 참여 등 관리 의무 사항과 함께, 보전 인센티브·체험 관광 수익 배분 등 권리 사항을 균형 있게 포함

3)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아직 농업유산지구의 실제 지정 사례가 없는 시점에서, 농업유산의 공간적 특성에 기반한 지구 설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선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머지않아 농업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농업유산의 5개 공간 유형 분류, 유형별 범위 설정 방법, 핵심보전구역과 연계활용구역의 구분, 가치순환 모델에 기반한 지구 운용 방향 등이 지자체 실무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무엇보다 농업유산지구 제도가 단순한 보전 규제가 아닌, 전통농업의 지속과 지역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동적 보전의 공간적 실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현장 지향적 정책 사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강진군. (202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템 자원조사 및 다원적 활용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고성군. (2017). 고성 해안지역 둠병 관개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 관계부처 합동. (2025). 한국의 전통 농어업 유산 4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공식 인증. 11월 2일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5). 2025~2029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구례군. (2024). 산동 산수유농업시스템.
-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가중요농업유산 올진 금강송 산지농업 이야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농업과학원. (2022). 농촌다움자원② 농업유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권봉관. (2024). 농업유산지구 도입에 대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 개선 방안 -A군의 농업유산 지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80, 73-107.
- 금산군. (2018). 금산 인삼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 김정섭, 정문수, 손학기, 석현덕, 조성은. (2020).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실태 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지효, 정명철. (2020). 지속가능한 농업유산의 동적보전 방안 개발. 관광레저연구, 32(5), 445-464.
- 김현지. (2024). 일본 세계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사례 분석 연구. 지역과 문화, 11(3), 107-135.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창원 독피 감 농업을 제17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5).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시행지침('25년).
-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제2025-347호).
-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제2025-486호).
- 농림축산식품부. (2026). '26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책 업무계획.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 (2022). 국가중요농업유산 10년,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다. 11월 16일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5). 제9회 동아시아 농어업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9월 18일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e지. <https://www.nongupez.go.kr>
- 담양군. (2021).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보전·관리 종합계획.
- 도지윤, 정명철. (202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객 인식 변화: 울릉 화산섬 발농업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31(3), 173-183.
- 도지윤, 정명철. (2023). 농촌 재생을 위한 농업유산 지정 효과 측정 연구. 환경영향평가, 32(4), 214-229.
- 백승석. (2017).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2), 98-107.
- 보성군. (2019).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성 차농업시스템 보전관리 종합계획.
- 부안군. (2016).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 상주시. (2021). 상주 전통 꽃감농업 아카이브 구축 및 보전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 서천군. (2022).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자원 설명서.
- 완도군. (2023).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시행계획.
- 완주군. (202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증장기 보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계획.
- 울진군. (2022). 울진금강송 산지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핵심보전구역 지정관리 종합계획.
- 윤준병 의원 등 10인. (20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0, 2025.9.16. 제안).
- 의성군. (2018). 의성 최소우지역 전통제언 농업시스템.
- 이유직, 이다영. (2019). 국가중요농업유산 이해관계자의 협력관계 분석. 농촌계획, 25(1), 11-20
- 이정환, 유학열, 전영옥, 최식인, 윤원근. (2018).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 관리체계 개발 연구. 농촌계획, 24(3), 13-24.
- 임근옥. (2021). 농업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개발 전략: 강진군 병영면을 중심으로.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31(1), 75-89
- 장흥군. (2020).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보전관리 기본계획.
- 정명철, 문효연, 윤순덕, 김상범. (2016).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농업유산의 특성 분석. 농촌계획, 22(4), 171-182.
- 정명철, 권봉관, 김미희. (2022). 전통수리시설의 특징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농업유산 선정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무형유산(국립무형유산원) 12, 216-242.
- 정연미. (2023). 산수유마을로는 성이 안 차? 구례군 골프장 건설 강행 논란. 축제뉴스 6월 24일 기사.
- 정읍시. (2025). 202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설명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 정해용. (2021).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도입 연구: 강원도 철원군을 사례로.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31(3), 69-80
-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 제9회 동아시아농어업유산협의회(ERAHS) 국제 컨퍼런스 홈페이지. <https://erahs.krha.co.kr/ko/heritage/system>
- 창원시. (2019). 창원 단감농업 농업자원 설명서.
- 청양군. (2025). 청양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학술 용역.
- 하동군. (2017). 하동 전통 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1.)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1.2.)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41호, 시행 2025.11.4.)
-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2호, 시행 2025.4.17.)
-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D.Lgs. 42/2004 (이탈리아 문화유산·경관법전).
- Criado. (n.d.). Plan de la Huerta de Valencia. Generalitat Valenciana.
- Decreto 219/2018, Plan de acción territorial de ordenación y dinamización de la Huerta de València (발렌시아 오르타 영토행동계획).
- Disciplinare Di Produzione Dei Vini A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Soave" (소아베 DOC 생산규정).
- masqueingenieros engineering & consultng, <https://masqueingenieros.com/pat-de-la-huerta-valencia/>
- FAO. (2005). GIAHS Strategic Framework.
- FAO. (2011).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 Legacy for the Future.
- FAO. (2023). Guidelines for Developing a GIAHS Proposal Document.
- FAO. (2026).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Background. <https://www.fao.org/giahs/background/en>
- FAO. (2026).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Become a GIAHS. <https://www.fao.org/giahs/become-a-giahs/en>
- FAO. (2026).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fao.org/giahs/frequently-asked-questions/en>
- FAO. (2026). Soave Traditional Vineyards, Italy, <https://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italy-soave-traditional-system/en>
- FAO. (2026). Historical Irrigation System at l'Horta de València, Spain. <https://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spain-valencia-historical-irrigation-system/en>
- FAO. (2026).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Japan. <https://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japan-nishi-awa-agriculture-system/en>
- Ley 5/2018, de la Huerta de València (발렌시아 오르타법, Última modificación: 29 de diciembre de 2025).
- Regulation (EU) No. 1308/2013 (EU 공동시장조직 규칙).
- Soave Consorzio Tutela. (2018). Soave Traditional Vineyards. GIAHS proposal. Itali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Policies (MiPAAF).
- Testo Unico del Vino, Legge 238/2016 (이탈리아 와인통합법).
- Tokushima-Mt. Tsurugi GIAHS Promotion Association. (2017).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GIAHS Conservation Plan (2017-2021).
- Tokushima-Mt. Tsurugi GIAHS Promotion Association. (2018).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GIAHS proposal.
- València City Council. (2019). Historical Irrigation System at l'Horta de València. GIAHS proposal.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of Spain (MAPAMA).
- にし阿波の傾斜地農耕システム. (2026). 徳島剣山世界農業遺産推進協議会とは. <https://giahs-tokushima.jp/aboutus>

